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PREYING
ON
POVERTY**



*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2008년 결성된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의 연대체로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국내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한국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최빈국’ 캄보디아에도 국내 시중은행이 다수 진출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KB국민은행은 2021년 캄보디아 최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인 ‘프라삭’을 인수하여 2023년 현지 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KB프라삭은행’을 출범했다. 우리은행도 2018년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비전펀드캄보디아’를 인수하여 2020년 현지 법인과 합병을 통해 ‘캄보디아우리은행’을 출범했다.

‘마이크로파이낸스’란 1970년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은행’의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신용이 없는 빈곤층, 특히 농촌 여성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농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소액금융을 뜻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 퇴치 및 취약층의 경제 역량 강화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유누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인수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역시 본래 이런 취지로 시작된 비영리 단체였다. KB국민은행이 인수한 ‘프라삭’은 1995년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된 캄보디아 농촌의 재건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어 캄보디아 최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성장했고, 우리은행이 인수한 ‘비전펀드캄보디아’는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에서 2003년 설립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영리 사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기존 비영리 사업의 수혜 대상이었던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시작했다. 더이상 빈곤 퇴치를 위해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토지를 담보로 점점 많은 금액을 빌려주어 이자 수익을 극대화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교육수준과 금융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점점 더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했고 담보의 가치를 바탕으로 가구의 현금 흐름상 갚을 수 없는 많은 금액을 빌려줬다.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은행 직원들은 담보로 잡힌 토지를 비사법적으로 매각하거나 사채를 받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였고, 이는 농민의 생계수단인 토지의 상실,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빈곤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빈곤의 심화는 식량 부족, 건강 악화, 주거 취약, 아동 노동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2010년대 후반부터 현지 인권단체, 외신, 해외 연구진, 유엔 인권 기구 등은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계의 대출 관행이 현지 주민, 특히 주고객층인 농촌 빈곤층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고 빈곤을 심화시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2023년 7월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은 소액금융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토지 담보로 캄보디아에서 지난 5년간 약 167,000가구가 토지 매각을 강요당했고 이는 빈곤을 상승에 기여했다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¹ 이런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문제가 되는 현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인수를 진행했고, 인수 합병 후에도 빈곤층, 특히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² 비윤리적 대출 사업을 지속하였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24년 8월 약 열흘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캄보디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캄보디아 각지에서 두 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4가구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와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정책과 관행에서 그동안 현지 인권단체, 외신 등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확인되었고, 이 문제들은 현지 주민,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선주민’을 포함한 농촌 빈곤층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은행의 일선 직원들은 금융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대면 영업 정책을 펼쳤고, 주로 토지를 담보로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금액을 빌려주었다. 영업 직원들은 돈을 쉽게 빌려주겠다며 더 많은 금액을 빌릴 것을 권유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나 담보 처리 절차 등 중요 계약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높은 이자율과 각종 수수료로 빚은 불어나고, 코로나19로 인

1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Vitit Muntarbhorn, A/HRC/54/75 (2023. 7. 20).

2 두 은행의 202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KB프라삭은행은 대출 고객의 90.6%가 농촌에 거주하고 77%가 여성이며, 캄보디아우리은행은 대출 고객의 72%가 농촌에 거주하고 69%가 여성이다. 평균 대출 금액은 각각 8,141달러와 6,905달러로 캄보디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5배와 3.8배에 달한다.

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실패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은행 직원들의 공격적 추심 행위가 시작되었다. 은행 직원들은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가족을 괴롭히고, 아이들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경찰을 부르거나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당신이 자살해도 아이들이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잡힌 토지를 스스로 팔거나 사채를 얻으라고 압박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현지 실태조사단이 만난 피해자 가족들은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과도한 빚에 시달리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식량을 줄여야 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기도 했다. 영양 부족으로 신체적 건강이 나빠짐은 물론, 빚 상황에 대한 압박으로 정신적 건강도 악화하였다. 결국 두 은행의 사업 관행은 이미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농촌 빈곤층을 더욱 깊은 빈곤에 빠뜨리며 이들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토지권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업활동을 통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두 은행 스스로도 이런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KB금융그룹은 ‘인권정책’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밝혔고, 우리금융그룹 역시 ‘인권원칙’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밝혔다. 그러나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비롯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을 위반했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그리고 그 모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존중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방지·완화·제거·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실효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관할권 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인권보호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사,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의 국내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목차

조사 방법	13	나. 피해자 면담	33
문헌 조사	13	1) 개요	33
현지 실태조사	13	2) 채무자의 특성	33
1. 배경	14	3) 대출 과정	38
가. 개인 부채와 인권	14	4) 담보 설정 관행	33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16	5) 상환 과정	52
1)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정의 및 발전 과정	16	6) 추심 과정	58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확장과 문제점	18	7) 구제 절차	64
다.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20	8) 영향 및 피해	67
1) 배경	20	9) 소결	74
2) 문제점	22	다. 관련 기관 면담	75
3) 인권침해 상황	23	1) 현지 인권 단체	75
4) 한국 은행의 캄보디아 MF업체 진출	24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	77
2. 현지 실태조사 결과	28	3. 인권 영향 분석	80
가.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은행 면담	28	가. 개요	80
1) 개요	28	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80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 관련	28	1)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81
3) 대출 심사 절차 및 기준	29	2)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83
4) 이자율, 수수료 및 담보 관련	30	3) 건강에 대한 권리	85
5) 채권 추심 절차 및 기준	30	4)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아동 노동	86
6) 토지 강매 관련	32	5)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	88
7) 대출담당직원의 급여 구조 및 교육	32	6) 기타 국제인권규범상 권리	89
8) 기타	32		

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규범	90
1) 개요	90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92
3) 유엔 책임은행원칙(UN PRB)	99
4) Cerise+SPTF 고객보호기준(Client Protection Standards	101
5) 모기업의 인권 정책	110
라.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의무	111
1)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의무	112
2)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114
마. 소결	114
 4. 권고사항	 116
1) KB국민은행(KB금융그룹)과 우리은행(우리금융그룹)	117
2)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119
3) 대한민국 정부(금융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19
4) 국민연금공단 및 기타 투자·협력사	120
 부록: 피해자 면담 사례 요약	 121
참고 문헌	126
발행 정보	137

들어가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 역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상품을 수출하고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은행들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추어 해외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형태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최저개발국인 캄보디아에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국내 시중은행이 다수 진출해 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법인은 과거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빈곤층에 소액 금융을 제공하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을 인수, 합병하고 최근 상업은행 인가를 받았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인수한 ‘프라삭(PRASAC)’은 캄보디아 최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직전인 2022년 캄보디아 전체 마이크로파이낸스 업계 대출의 46%를 점유하였다.³

그러나 수년 전부터 해외 연구와 외신 보도는 두 은행이 인수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포함한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계의 빈곤층 대상 ‘약탈적 대출’ 관행과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여 왔다.⁴ ‘약탈적 대출’이란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담보의 가치 등만 고려해서

3 National Bank of Cambodia, Data on MFI Sector, Report of Loan and Non-performing Loan, https://www.nbc.gov.kh/english/economic_research/mfis_reports.php (2023. 12. 31.).

4 Gavin Finch and David Kocieniewski, “Big Money Backs Tiny Loans That Lead to Debt, Despair and Even Suicide”,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2-microfinance-banks-profit-off-developing-world/> (2022. 5. 3.); Jack Brook, “‘I am afraid I will kill myself, like my husband’: spotlight on loan firms in Cambodia after Indigenous suicid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oct/23/cambodia-microfinance-loan-firms-indigenous-people> (2023. 10. 23.); Jack Brook, “Cambodia’s microfinance sector hit by predatory lending claims”,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Finance/Cambodia-s-microfinance-sector-hit-by-predatory-lending-claims> (2023. 11. 11.).



<사진 2> 캄보디아 지방도시의 KB프라삭은행 지점 ©손고운(한겨레21)

과도한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얻는 비윤리적 대출 관행을 뜻한다.⁵ 두 은행이 인수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주로 금융 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곤층의 토지를 담보로 가구의 현금 흐름상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높은 이자율에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 방식으로 추가 대출이나 사채로 빚을 돌려막도록 종용하여 채무자의 빚이 더욱 불어나고, 결국 담보 토지를 비사법적으로 매각하도록 압박하여 농촌 빈곤층은 생계수단인 토지를 상실하고 더욱 깊은 가난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 은행들의 현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인수합병과 상업은행 전환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5 한국은행, “이용호 본부장, ‘약탈적 대출’(기호일보 기고)” (2011. 6. 22.),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95/view.do?nttlId=170949&menuNo=200559&searchBbsSeCd=z19&pageIndex=65> (2025. 4. 20. 확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24년 1월경 캄보디아 현지 인권 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대응에 착수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외 연구와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지만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입장도 공개된 것이 없었다. 이에 네트워크는 2024년 4월 23일 현지 인권 단체와 함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캄보디아 법인의 사업 관행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후 두 은행 본사와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에 직접 전화를 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두 은행의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2024년 7월 10일 우리은행, 7월 12일 KB국민은행에 각각 소비자 민원을 제기했으나, 우리은행은 캄보디아우리은행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KB국민은행은 회신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은행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약탈적 대출 관행과 인권 침해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네트워크 현지 실태조사단은 2024년 8월, 약 열흘에 걸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라타나키리 주, 캄퐁참 주 등에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법인, 두 은행의 채무자 14가구, 현지 인권 단체, 선주민 단체,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등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소액금융* 사업을 하는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법인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법인 ‘캄보디아우리은행(Woori Bank (Cambodia) Plc.)’의 대출 관행과 이로 인한 현지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업의 인권준중책임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두 현지 법인과 한국에 있는 은행 본사 및 모기업, 국민연금 등 투자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와 ‘소액금융’을 혼용한다. 캄보디아에서는 과거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무담보로 소액금융을 제공하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사업 목적과 방식이 변질되어, 대출 규모도 더 이상 ‘소액’으로 보기 어렵지만, 같은 농민 빈곤층을 주 고객층으로 하며 캄보디아 은행법상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방법

문헌 조사

네트워크는 총 5명의 현지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조사 전후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취지와 방법론,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맥락,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발전 양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을 지적한 현지 인권 단체 보고서, 외신 보도, 해외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이런 지적에 대한 두 은행의 공개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아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Cambodia Microfinance Association) 누리집에 게재된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캄보디아의 소액금융업 관련 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은행법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두 은행의 2023년 연간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출과 추심 관련 내부규정과 지침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그룹의 준법감시인/옴부즈만 사무소(CAO)에서 프라삭을 포함한 캄보디아 내 6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진정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평가 보고서와 이 문제를 지적한 유엔 문서들을 참고하였다.

현지 실태조사

조사단은 2024년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약 열흘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부 캄퐁참(Kampong Cham) 주, 북동부 라타나키리(Ratanakiri) 주 등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차례 요청 끝에 프놈펜에 위치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임원진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현지 인권 단체의 소개로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양한 출신 지역⁶과 배경의 채무자 14가구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선주민⁷ 가구와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북동부 라타나키리 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채무자 면담은 현지 단체의 개입 없이 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현지조사를 일부 동행한 한겨레21 기자도 참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현지 인권 단체, 현지 선주민 단체,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등 기타 관계 기관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6 수도 프놈펜과 Ratanakiri, Preah Vihear, Tboung Khmum, Pailin, Koh Kong 등 5개 주.

7 본 보고서에서는 “indigenous peoples”를 “선주민”으로 번역한다. 선주민이란 조상 대대로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을 뜻한다. 캄보디아의 맥락에서는 주로 북동부 고원지대에 대대로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지칭하며 다수민족인 크메르인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1. 배경

가. 개인 부채와 인권⁸

전세계적으로 개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금융화로 인하여 금융의 공급이 확대되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인간의 많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재정적 욕구로 재구성되고 있다. 더불어 국가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개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에 대한 접근성, 가용성, 경제성 및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인권 의무가 담당하던 영역의 상당 부분이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힘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개인 부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재정 능력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게 또는 개인 부채는 때때로 사회적 이동이나 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사회 통합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부채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거나 인권 침해를 야기하여 특히 소외되거나 취약한 상황에

8 UN Human Rights Council, Private debt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ffects of foreign debt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States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HRC/43/45 (2020. 1. 3.).

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문제가 된다. 과도한 부채(상환 및 관련 비용이 채무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필요한 자원의 박탈을 수반하는 부채), 남용적인 계약 조건 및 추심 관행은 개인 또는 가게에 부담과 위협이 되어, 인권의 실현을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국제인권기준은 과도한 부채와 남용적인 대출 및 추심 관행 등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권리로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사회 보장, 정당한 보수, 식량, 주택, 교육, 의복, 의료 및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치 및 공공 참여에 대한 권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매우 낮은 수준의 사회 보호 및 사회복지 관련 공공 지출과 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점진적 약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에 의존하고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경제성, 접근성 및 품질은 주거, 건강 및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한계(저임금, 빈곤, 높은 생활비, 인플레이션)와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부채와 경제적 취약에 노출된 개인은 종종 강력한 경제 세력이나 행위자, 높은 수준의 불평등, 낮은 책임 수준, 서비스 금융화의 증가, 사법 또는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한다.

개인 부채의 당사자들은 채무 집행 강제, 악의적인 추심 관행과 채무자의 범죄화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대출 기관은 채무의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사법적 강제 집행 외에도 '공식 기관'에서 비금융 기관에 이르는 채권 추심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매일 전화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수치심을 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신용카드를 압수하여 채무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빚진 금액(이자 포함)을 인출하도록 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과도한 채무는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처벌을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다.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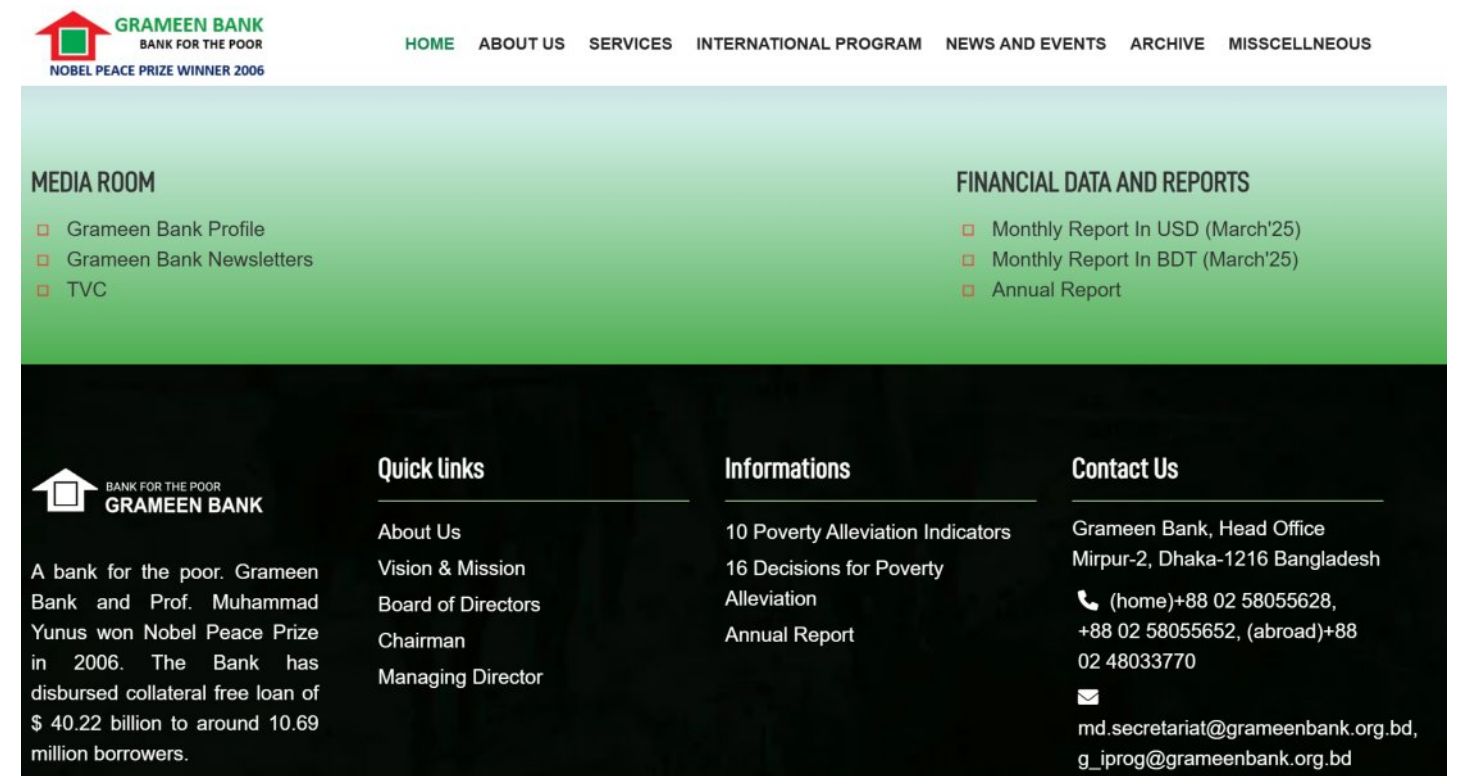
1)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정의 및 발전 과정

‘마이크로파이낸스’란, 소규모 사업체 또는 빈곤층 개인에게 소액의 대출, 저축, 보험, 송금 등의 종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층의 요구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자립이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영리 추구가 주목적인 대부업과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비즈니스이다. 자녀가 일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빈곤층에게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 소액대출이 이루어지면 자녀는 노동을 하는 대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아동노동 문제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빈곤층에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빈곤층이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경우 일반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반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소액금융기관은 빈곤층을 주 고객으로 하여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의 경우 시중 은행의 지점은 설치되지 않은 반면, 마이크로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금융기관은 농촌 빈곤층의 수요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낙후지역에서도 은행 업무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일부 국가에서 농촌 빈곤층의 경제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격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저임금의 여성과 소외된 지역사회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사회복지와 공공부조를 대체하며 부상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핵심인 빈민 대상 소액대출 사업의 원형은 중세 시대부터 찾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명칭의 금융 사업이 등장한 것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대학교(University of Chittagong)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한 이후이다. 담보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신용만으로 대출해주되 보증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보증으로 하고 철저하게 사업용 대출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은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용어는 신용대출, 저축, 보험, 연금 등 빈민 대상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인 ‘마이크로파이낸스’, 즉 ‘소액금융’으로 대체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설립 3년 만에 500여 가구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등 방글라데시 빈곤 퇴치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았으며, 98%라는 높은 회수율을 기록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던 일각의 목소리도 불식시켰다. 유누스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찬사와 함께 2006년 노벨평화

상을 받았다.⁹ 이러한 유누스의 그라민 은행은 빈곤 퇴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고, 저개발 국가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진 3>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은행'을 표방하는 그라민은행 홈페이지(출처: <https://grameenbank.org.bd/>)

9 심진용, “빈곤을 착취하는, 그라민은행의 또 다른 ‘민낯’”,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511271958165> (2015. 11. 27).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확장과 문제점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소액금융 시장이 과열되어 사회적·경제적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목적성을 상실한 이익 추구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념이 왜곡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 혹은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개념이 최초로 주창된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어두운 이면이 나타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념은 정부 경제 관련 부처에서 활동하던 중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부조에 한계를 느낀 무함마드 유누스에 의해, 시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시되었다.¹⁰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 개념은 본래 국가의 과업인 빈민 구제를 시장이 대체하고, 국가의 개입을 배격하는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다분하다. 이에 그라민 은행은 복지비용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모델을 촉진하는 선구자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유누스는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는 모두 알아서 살았다. 도움을 청할 국가는 없었다.”라는 언급을 통해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낸 바 있다.¹¹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와 상품화”로, 지적재산권이나 유전자 정보 등 기존에 공유재였던 자산을 특정 자본가의 사유재산으로 전환시켜 지배계급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그라민 은행은 프랑스의 베올리아사(社)와 합작하여 농촌 주민에게 무비소 생수를 판매하고 있다.¹² 공유재이자 필수재인 물을 국가가 관리하여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를 통해 빈민들에게마저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것이다. 둘째, 금융화다.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리고 빈곤집단을 금융적으로 탈취해 부를 부자 집단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라민 은행은 고정 이율 20%의 높은 이자(1998년 기준)뿐만 아니라 그룹 회비, 의무 저축, 가입비, 취소 수수료, 개량종 종자를 끼워 파는 농업 대출 등을 통해 채무자가 대출 원금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도록 하였다.¹³ 셋째, 위기의 관리와 조작이다. 이는 제3세계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빌미로 그들에게 빚을 지게 해서 수탈하고 또 신자유주의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1996년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던 NGO들은 빈민 10만 명을 동원한 시위를 통해 빈곤 근절을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파이낸스 확대를 위한 예산 1억 타카가 편성되었고, 소액금융 대출은 더욱 확대되었다.¹⁴ 넷째, 국가에 의한 재분배다. 이는 공공 자산의 민간 소유로의 대규모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공공 자산이란 유형적 국가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헬스케어, 사회사업, 인프라, 연금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영향력 확

대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수해 복구, 이재민 구호 등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이들이 주도하게 되었다.¹⁵

유엔 외채 독립전문가 보고서에 드러난 스리랑카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예만 보더라도 현재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¹⁶ 2017년 기준 스리랑카에 등록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약 70개에 이르는데, 빈곤 지역이나 전쟁 피해 지역의 여성들이 이런 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최대 연 30%의 단리를 부과하지만, 최대 연 220%까지 부과하고 복리를 적용하는 기관도 있다. 대출 기관이 대출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매우 많은 수의 여성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착취적인 금융 시스템에 갇히게 된다. 일부 기관은 가난한 대출자, 특히 여성에게 막대한 압력을 가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여성의 집에 매일 방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 시간씩 머무르기도 한다. 여성들은 때때로 추심원들의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추심업자로부터 ‘성적 동의’와 할부를 교환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일부 여성 채무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장을 팔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소액금융기관들이 빈민 구제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공격적인 대출 영업과 추심을 통해 빈곤층을 과도한 빚으로 몰고있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¹⁷ 2010년대 초 인도에서는 불과 몇 달 사이에 80명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¹⁸

¹⁰ 조선경, “무함마드 유누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세요””, 동아비즈니스리뷰 (2012. 7. 26.),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5108/ac/magazine (2025. 4. 20. 확인).

¹¹ Lamia Karim (박소현 번역), 가난을 판다: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착한 자본주의의 맨얼굴, 오월의봄 (2015), 28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Women in Debt in Banglades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¹² 김종현, “신랄한 신자유주의 비판, 아쉬운 설명과 대안”, 마르크스21 제15호 (2016), 128-147.

¹³ Lamia Karim(주 11), 앞의 글, 141.

¹⁴ 위의 글, 76.

¹⁵ 위의 글, 86-87.

¹⁶ UN Human Rights Council, Visit to Sri Lanka: 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ffects of foreign debt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States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HRC/40/57 (2019. 1. 17.).

¹⁷ Finch, Gavin and David Kocieniewski, “Big Money Backs Tiny Loans That Lead to Debt, Despair and Even Suicide”,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2-microfinance-banks-profit-off-developing-world/> (2022. 5. 3.).

¹⁸ Soutik Biswas, “India's micro-finance suicide epidemic”, BBC,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997571> (2010. 12. 16).

다.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배경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약 1,718만 명의 왕국이다.¹⁹ 캄보디아는 과거 찬란한 크메르 문명의 발상지였지만, 근현대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 ‘킬링 필드’로 악명을 떨쳤던 크메르루즈 정권의 집단학살, 베트남과의 오랜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권위주의 세습 독재 정권 등 여러 역사적 비극을 겪었다. 캄보디아는 유엔에서 지정한 전세계에서 사회경제적 개발 수준이 가장 낮은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 소위 ‘최빈국’)에 해당한다.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이 연간 1,810 미국 달러(이하 “달러”)에 불과하고²⁰ 빈곤율은 20%에 육박한다.²¹ 캄보디아의 빈곤선²²은 인당 하루 10,951 캄보디아 리엘(이하 “리엘”)로 원화로 약 4,000원이다.²³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커서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²⁴ 기대수명과 소득 및 교육 수준으로 산정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193개국 중 148위이다.²⁵

캄보디아의 빈곤율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간 동안 30-35%에서 13.5%(2018-19)로 크게 감소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8%로 다시 증가했다.²⁶ 건강, 교육, 생활 수준 지표로 빈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다차원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에 따라 측정된 캄보디아의 다차원 빈곤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2%(613만 명)이다. 이 중 13.2%는 심각한 다차원 빈곤 상태이며, 21.1%는 다차원 빈곤 취약계층이다. 전체 취약계층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58.3%가 빈곤 또는 빈곤 위험에 처해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5.4%(848.6만 명)가 빈곤선 바로 위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소득은 국제 빈곤선의 2배 이하이다.²⁷

19 외교부, “국가/지역 검색: 캄보디아 왕국”,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9 (2025. 3. 20. 확인).

20 Asia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Databas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tlas Method, https://kidb.adb.org/explore?filter%5Bindicator_id%5D=2200006&filter%5Beconomy_code%5D=CAM&filter%5Byear%5D=2023&grouping=indicators&showRegions=false (2025. 3. 20. 확인). 2023년 기준.

21 World Bank Group, Pandemic Checks Cambodia's Progress on Poverty,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1/28/pandemic-checks-cambodia-s-progress-on-poverty> (2022. 11. 28.). 2020-2022년 평균.

22 ‘빈곤선(poverty line)’이란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 수준을 뜻한다.

23 World Bank Group, Cambodia Poverty Assessment: Toward a More Inclusive and Resilient Cambodia, <https://hdl.handle.net/10986/38344> (2022. 11.).

24 위의 글. 2022년 추산.

25 U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3-24> (2024. 3. 13.).

26 Frank Bliss, ““Micro” Finance in Cambodia: Development,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Peace (2022. 8. 3.), 19.

27 Frank Bliss, 위의 글, 19

캄보디아는 2023년 말 기준 58개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87개의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 이하 ‘MFI’)이 운영 중으로, 세계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이다.²⁸ 캄보디아의 경우 상업은행 대출과 비교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은 작은 규모의 대출이 짧은 심사과정을 통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 각광을 받았다.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사업을 하는 MFI의 경우 대출 잔액 25,000달러까지는 캄보디아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소액대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많은 업체가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 사업에 뛰어들었고, 2012년~2017년 불과 5년 사이에 소액금융기관의 수가 약 두 배 증가한 바 있다.²⁹ 다수의 MFI가 경쟁관계에 놓임에 따라 기존 일반 상업은행이 진출하지 않았던 농촌 지역에도 다수의 지점이 개설되어 은행 업무의 접근성 면에서도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 강점을 보인 MFI는 캄보디아 서민들의 주요한 금융기관이 되었다.³⁰ 그런데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은 점점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20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무역과 관광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가인 캄보디아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³¹ 실제로 1995년 이후 줄곧 GDP 성장률이 양(陽)의 값을 가졌던 캄보디아는 26년만인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 이후 계속하여 7%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주저앉았다.³²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낮아지자 개인들은 소액금융기관에서 생활비를 대출하였고, 증가한 개인부채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³³ 2020년 9월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업체인 프라삭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28억 6,2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14.43% 증가(개인 대출 비율 35.69%)하였을 정도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캄보디아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민간부문 부채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위험은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³⁴

28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경제 동향 (2024.2.10-16)”, 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104/view.do?seq=1346097 (2025. 4. 20. 확인).

29 KOTRA, “캄보디아 정부 고리대금과의 전쟁, 소액대출기업에 불통”,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sNo=218772&mid=a10400000000> (2017. 6. 15.).

30 Chheang Lapy, “Microfinance in Cambod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 17.).

31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in the time of Covid-19”, <https://documents.worldbank.org/pt/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165091590723843418/cambodia-economic-update-cambodia-in-the-time-of-covid-19-special-focus-teacher-accountability-and-student-learning-outcomes> (2020. 5. 29.).

32 World Bank Group,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5. 3. 20. 확인).

33 Sangeetha Amarthalingam, “Raising the alarm on rising private debt”, The Phnom Penh Post, <https://www.phnompenhpost.com/special-reports/raising-alarm-rising-private-debt> (2020. 12. 31.).

34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23”, https://www.nbc.gov.kh/english/publications/annual_reports.php (2025. 4. 3. 확인).

2) 문제점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또는 공공부조를 대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무함마드 유누스에 의해 시작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빈민 구제를 위한 목적을 가장 우선시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MFI는 빈민 구제보다는 수익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목적성을 상실한 캄보디아의 MFI는 과열된 소액금융 시장에서 채무자에 큰 부담을 지운다. 과거 MFI가 부과하는 높은 연간 이자율(경우에 따라 최대 20% 또는 30%)은 일반적으로 외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소액 및 고위험 대출이 다수 존재하는 포트폴리오를 감독하는 데에 사용되는 높은 비용으로 정당화되었다.³⁵ 이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은 현지 통화와 달러로 표시된 소액 금융 대출의 연간 이자율을 18%로 제한하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금융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기도하였으나, 캄보디아의 MFI는 이자 소득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비(非)금리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이자 상한선이 설정된 이후 소액금융 대출 관련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³⁶ 87개에 달하는 MFI가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낮아 치열한 시장경쟁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고객의 부담은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대출 고객의 부담이 큰 이유는, 과잉 경쟁 시장에서 각 MFI가 생존하기 위해 운영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을 확보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금융 지식의 부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MFI가 이자율이나 수수료율을 낮출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문해력(financial literacy)’이란 기본적인 금융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금융이해력의 부족을 ‘금융 문맹’이라고도 한다. 캄보디아의 금융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82%로, 대부분의 국민이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무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없다.³⁷ 금융문맹의 경우 대출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 다른 MFI와의 상품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MFI 직원의 권유에 의해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 및 수수료에 관해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와 같은 MFI 협회를 통한 직접적 담합, 또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암묵적인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채무자가 채무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상황에서 MFI는 경쟁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 부담에 놓이게 된다.

한편 캄보디아 MFI의 부실채권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캄보디아 MFI의 부실채권

비율은 6.5%로, 전년도 2.5%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³⁸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 경제 둔화와 회복 지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캄보디아의 대출 이자율 상승,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조정이 된 채권의 부실채권으로의 재분류, 개인 대출자의 상환(이른바 ‘돌려막기’)을 위한 신규 대출과 이로 인한 상환 불능 가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실채권의 급증은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인권침해 상황

캄보디아 MFI들의 비윤리적 대출 관행으로 인한 현지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LICADHO와 Equitable Cambodia를 비롯한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부터 MFI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간했다.³⁹ 2022년 발간된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 역시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업계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⁴⁰ 또한 현재 세계은행그룹의 준법감시인/옴부즈만 사무소에 프라삭을 포함한 캄보디아 6개 MFI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⁴¹ 이러한 연구와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MFI에 의해 토지 매각 강요, 추심과정에서의 불법 협박 및 강압, 아동 노동과 식량 부족의 결과 초래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유엔 캄보디아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2023년 이미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지적과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소액 금융과 연계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토지 상실, 식량 안보 약화로 이어지는 부채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약 5,000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은 특히 담보로 사용되는 토지의 대규모 손실과 연계되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증가로 인해 부채와 박탈로 이어지는 유인으로 부상했다.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 중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67,000 가구가 대출 상환을 위해 토지를 팔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을 규제하는 법령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35 Hang Sokunthea, Cambodia's Largest MFIs Eye Future as Commercial Banks, The Cambodian Daily, <https://english.cambodiadaily.com/news/cambodias-largest-mfis-eye-future-as-commercial-banks-126859/> (2017. 3. 22.).

36 Dyna Heng, Impacts of Interest Rate Cap on Financial Inclusion in Cambodia, IMF Working Paper,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04/29/Impacts-of-Interest-Rate-Cap-on-Financial-Inclusion-in-Cambodia-50349> (2021. 4. 29.).

37 Leora Klapper,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S&P Global Finlit Survey, https://gflec.org/wp-content/uploads/2015/11/Finlit_paper_16_F2_singles.pdf (2015).

38 National Bank of Cambodia, Data on MFI Sector, Report of Loan and Non-performing Loan, https://www.nbc.gov.kh/english/economic_research/mfis_reports.php (2023. 12. 31.).

39 Office of the Compliance Advisor/Ombudsman(CAO), Cambodia: Financial Intermediaries-04, <https://www.cao-ombudsman.org/cases/cambodia-financial-intermediaries-04> (2025. 3. 20. 확인).

40 Frank Bliss(주 22), 앞의 글.

41 CAO(주 35), 앞의 글.



<사진 4> 지방도시의 캄보디아우리은행 지점 ©손고운(한겨레21)

이는 특히 고객 보호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금융 관행을 규제하고 대출 기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 탕감, 대출 구조 조정, 사회 보호 조치를 통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⁴²

4) 한국 은행의 캄보디아 MF업체 진출

캄보디아에서 비영리 소액금융 기관을 인수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다수의 한국 은행들은 과거 지원 대상이었던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영리 대출 사업을 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KB프라삭은행(KB PRASAC Bank Plc.)은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으로, 2023년 8월 캄보디아 국민은행과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이하 ‘프라삭’)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4월 프라삭 지분의 70%를 매수하였으며, 2021년 10월 모든 지분을 매수하였고 ‘KB프라삭은행’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8월 상업은행 인가를 받았다.

캄보디아우리은행(Woori Bank (Cambodia) Plc.)은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으로, 2020년 2월 Woori Finance Cambodia Plc.와 WB Finance Co. Ltd.의 합병 후 2021년 12월 사명 변경으로 설립되었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VisionFund (Cambodia) Ltd.를 인수하여 WB Finance Co. Ltd.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2021년 11월 캄보디아우리은행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았다. KB프라삭은행의 2023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의 9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75% 이상이 여성인데 2023년 한 해에만 이자 수익으로 약 6억 6771만달러(한화 약 9,275억원)을 벌어들였다.

두 은행은 최근 상업은행 인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액금융 사업을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KB프라삭은행은 캄보디아 최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으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직전인 2022년 캄보디아 전체 마이크로파이낸스 업계 대출의 46%를 점유하였다.⁴³

42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Vitit Muntarbhorn, A/HRC/54/75 (2023. 7. 20).

43 National Bank of Cambodia, Data on MFI Sector, Report of Loan and Non-performing Loan, , https://www.nbc.gov.kh/english/economic_research/mfis_reports.php (2023. 12. 31).



2. 현지 실태조사 결과

가.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은행 면담

1) 개요

조사단은 2024년 8월 6일 오전 KB프라삭은행 본사를 방문하고 같은날 오후 캄보디아우리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각 은행 임원진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단은 두 은행의 소액금융 사업 현황, 대출 심사, 채권 추심, 담보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내부 고충처리 제도, 제기된 약탈적 금융 및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두 은행 측의 답변을 아래에 주제별로 요약한다.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본래 취지 관련

조사단은 우선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가 빈곤 퇴치라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은행 측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두 은행 측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과거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취지는 이미 없어졌다고 답했다.

KB프라삭은행 임원은 빈곤 퇴치라는 취지가 '퇴색된 지 한참 되었다'며 지금은 일반적인 한국 저축은행 수준의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KB프라삭은행의 경우 상업은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과거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역시 인수할 당시 비전펀드는 이미 비영리기관이 아닌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작은 저축은행'이었다고 답했다. 덧붙여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서민의 자활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한국의 미소금융재단 등과 취지가 다르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취지를 토대로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투자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받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KB프라삭은행은 과거 개발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나 거의 다 상환하였고 지금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거래를 조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은 확실하지 않으나 상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3) 대출 심사 절차 및 기준

대출 심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질문에 두 은행 모두 관련 내규, 지침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환의지 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정부 규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에는 표준 대출약정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측은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이 상환해야 하는 총 금액(다른 대출 상환액 포함)의 최소 1.5배가 되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적은 농업 종사자의 경우 2.5, 2.8배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자의 부채자본비율(debt-to-equity ratio)이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KB프라삭은행 측은 신용 평가, 여신 상담을 까다롭게 한다며 약정서 부속자료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과다 채무 방지를 명시했다고 답했다.

4) 이자율, 수수료 및 담보 관련

두 은행 모두 이자율은 전체 대출 금액에 따라 유동적이며 전체 대출 금액의 1%에 상당한 행정수수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답했다. KB프라삭은행 측은 덧붙여 과거 다른 소액금융기관들이 총 대출 금액의 3-5%에 달하는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당국에 민원이 들어간 후 행정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담보와 관련하여 KB프라삭은행은 대출의 99%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를 통해 평균 대출 규모가 크게 상승하여 현재 소액금융 시장에 과도한 레버리징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KB프라삭은행의 경우 평균 대출 규모가 시장 평균 대비 낮음에도 약 8,000달러 정도로 캄보디아 인당 연간 GDP가 약 1,800 달러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캄보디아우리는행 측은 토지 담보는 취득하지만 담보의 가치가 높다고 더 많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레버리징 문제를 부인하였다. 토지 담보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담보만을 보고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5) 채권 추심 절차 및 기준

해외 연구와 외신에서 지적되었던 대출담당직원(credit officer; 소위 ‘CO’)의 공격적인 추심 방식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두 은행 모두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KB프라삭은행 측은 아직 ‘악랄한 행위’로 언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압적 추심에 관한 보도에 대해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CMA)나 캄보디아 은행 협회(ABC)와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한번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은행그룹의 준법감시인/옴부즈만 사무소에서 프라삭 등 6개 소액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측이 프라삭에 구두로 ‘프라삭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우리는행 측은 공격적 추심 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있고 사실 판명이 나면 징계절차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보도에 나온 것 같은 심한 사례는 없었고 최근에 징계는 없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는행 측은 추심 방식과 관련해서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추심을 하는 것이 관행이고, 대출담당직원 또는 지점장이 여러 절차를 거쳐 3번 이상 연락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채무자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했다. 협상, 중재 등 비사법적 수단을 우선 사용하고 변호사, 지방 당국과도 협력한다고 답했다. 법적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법적 규제 내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법절차는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는 지방 당국에 의해 “해결”된다고 답했다.



<사진 5> 길가의 KB프라삭은행 광고판 ©손고운(한겨레21)

추심 과정에서 지방 당국(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채무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캄보디아우리는행 측은 지방 당국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고 고객에게 갚으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력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이전의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추심과 관련하여 KB프라삭은행 측은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6) 토지 강매 관련

해외 연구와 외신에서 지적되었던 채무자의 토지 강매 지적과 관련하여 두 은행 측 모두 그런 강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측은 토지를 팔라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며 고객이 스스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프라삭은행 측은 오히려 사법절차를 통해 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많다고 답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주지 않고 당국에서도 금융기관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객을 보호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 대출담당직원의 급여 구조 및 교육

대출담당직원의 급여 및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질문에 KB프라삭은행 측은 기본급 월 250달러에 추심하는 금액의 15%가 인센티브로 누적되어 최대 1,0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 포트폴리오의 부실채권 비율이 3%가 넘어가면 인센티브가 제로가 된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측은 정확한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대출담당직원의 급여가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급은 목표대비 달성률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책정된다고 답했다.

대출담당직원의 교육에 대해서 KB프라삭은행은 부실채권관리, 고객정보보호, 은행의 사회적 역할, 윤리 강령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한국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측 역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기존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리프레시 오리엔테이션(refresh orientation)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8) 기타

두 은행 모두 내부 고충처리절차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우리은행 측은 고객센터 팀에서 불만을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해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센터 팀에서 유관 부서와 함께 대응한다고 답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직원을 조사하고 징계하지만 최근에 징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KB프라삭은행 측은 콜센터를 통한 민원처리 절차가 있고 은행 협회나 캄보디아중앙은행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점포마다 고객의 소리 함을 비치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선주민일 경우 별도의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은행 모두 별도의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소액금융기관 측에서 불법적으로 선주민의 공유토지를 담보로 설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두 은행 모두 공유 토지권은 담보로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KB프라삭은행 측은 은행이 억울한 점도 많으며 ‘선을 타면서’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피해자 면담

1) 개요

조사단은 2024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라타나키리(Ratanakiri) 주에서 피해자 8가구, 8월 11일 캄퐁참(Kampong Cham) 주에서 2가구, 8월 12일 프놈펜에서 4가구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총 14가구 중 KB프라삭은행의 채무자는 10가구, 캄보디아우리은행의 채무자는 4가구였다. 위 가구에는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이 인수하기 전 프라삭 또는 캄보디아비전펀드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대출을 유지하거나 갹신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면담에는 남성 11명, 여성 9명이 참여했고, 그 중 10명은 선주민이었다. 면담 결과를 토대로 채무자의 특성, 각 대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그 영향 및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가구별로 사례 1부터 사례 14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하였고, 부록에 각 사례를 요약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면담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채무자의 특성

가)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KB프라삭은행, 캄보디아우리은행을 비롯한 캄보디아의 소액금융기관들은 주로 농촌 빈곤층을 대상으로 영리 대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 대부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 종사자였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이웃의 빨래를 세탁해주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거나, 대출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를 잃고 채집 활동이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소득 수준은 대체로 낮았는데, 농업 종사자들의 경우 기후 변화나 농산물 시장 가격의 변동 등으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정확한 월 소득 파악이 어려웠다.

피해자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빈곤가구식별프로그램(ID Poor)에 따른 수급 대상자도 있었다. ID Poor는 표준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과 가구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가구들을 ID Poor 1(매우 빈곤한 가구), ID Poor 2(빈곤한 가구), At-risk(위험에 처한 가구), Non-poor (비빈곤 가구)로 분류한다.⁴⁴

44 Department of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Cambodia), "About the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Programme in Cambodia _ IDPoor",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Programme in Cambodia _ IDPoor, <https://idpoor.gov.kh/en/about/> (2025. 3. 18. 확인).

캄퐁스페우(Kampong Speu) 주의 모든 지역에서 소액금융 대출을 받은 7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 중 18%가 현재 또는 과거에 ID Poor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들이다. 과거 ID Poor로 분류되었던 가구는 9.9%, ID Poor 1인 가구는 6.1%, ID Poor 2로 분류된 가구는 2%였다.⁴⁵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ID Poor로 지정된 빈곤 가구의 재정예 큰 타격을 주었다. ID Poor 가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코로나19 이전의 소득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ID Poor 가구는 경제적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⁴⁶

피해자들의 교육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았다. 7-9학년(한국의 중학교에 상당)까지 교육받은 사례가 5건, 6학년 이하(한국의 초등학교에 상당)가 4건, 비정규 교육만 받았거나 문맹인 경우가 3건이었다. 특히 선주민의 경우 언어와 교육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채무 관계에서의 취약성으로 직결된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다수 있어, 교육 기회의 박탈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는 남성이 더 많았으나 실제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자는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다. KB프라삭은행의 2023년 연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여성 대출자와 농촌지역 대출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대출자는 2019년 332,372명(전체 대출자의 79.7%), 2020년 348,435명(78.7%), 2021년 362,630명(78.0%), 2022년 389,769명(77.6%), 2023년 422,527명(77%)이었다.⁴⁷ 농촌지역 대출자 역시 2019년 374,218명(89.7%), 2020년 397,547명(89.8%), 2021년 419,339명(90.2%), 2022년 455,099명(90.6%), 2023년 496,978명(90.6%)에 달했다.⁴⁸ 비율상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여전히 여성과 농촌 거주자가 대출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대출자는 2022년 약 139,743명(71%), 2023년 약 121,530명(69%)이며, 농촌지역 대출자는 2022년 약 141,711명(72%), 2023년 약 126,814명(72%)이다.⁴⁹

45 LICADHO, "Debt Threats: A Quantitative Study of Microloan Borrowers in Cambodia's Kampong Speu Province", (2023. 8.), 8.

46 UNICEF, World Food Programme, and Asian Development Bank, "COVID-19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Phase II Report", <https://www.wfp.org/publications/cambodia-covid-19-socio-economic-impact-assessment-phase-2-report> (2022. 12. 14), 6.

47 KB PRASAC Bank, "Annual Report 2023", KB PRASAC Bank, (2024), 35.

48 KB PRASAC Bank, "Annual Report 2023", KB PRASAC Bank, (2024), 52.

49 WOORI BANK (CAMBODIA) PLC., "Annual Report 2023", WOORI BANK (CAMBODIA) PLC., (2024), 42.

<표 1>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은행 대출자 현황(2023년)

	KB프라삭은행	캄보디아우리은행
총 대출자 수(number of active borrowers)	548,810명	176,130명
여성 대출자 비율	77%	69%
농촌 대출자 비율	90.6%	72%
평균 대출 금액(average loan portfolio)	8,141달러	6,905달러
2023년 캄보디아 1인당 국민총소득 ⁵⁰ 대비	4.5배	3.8배

이와 같이 KB국민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빈곤층 및 여성과 농민들을 대출 사업의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대출심사와 보호 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후술할 공격적인 영업과 추심 행위에 따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들의 빈곤과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나) 선주민

‘선주민(先住民, indigenous people)’이란 조상 대대로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을 뜻한다.⁵¹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 중 과반이 캄보디아 선주민이었다. 선주민들은 약탈적 대출 관행에 특히 취약하며 그로 인한 피해도 더 크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제한된 교육 기회,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24개의 서로 다른 선주민 민족이 있으며 최소 19개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⁵² 선주민 인구는 17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한다. 다만 정부 데이터는 민족이 아닌 언어를 기준으로 선주민을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다. 일부 선주민들은 주류 사회에서 선주민에 대한 차별과 과거 크메르루주 정권의 선주민 학살, 캄보디아 정부의 폭력

50 Asia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Databas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tlas Method", https://kidb.adb.org/explore?filter%5Bindicator_id%5D=2200006&filter%5Beconomy_code%5D=CAM&filter%5Byear%5D=2023&grouping=indicators&showRegions=false (2025. 3. 20. 확인). 연 1,810달러.

51 World Bank Group, Indigenous Peoples, <https://www.worldbank.org/en/topic/indigenouspeoples> (2025. 3. 20. 확인).

52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Cambodia - IWGIA -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https://www.iwgia.org/en/cambodia.html> (2025. 1. 13. 확인).



적인 ‘동화 정책’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당국에 선주민임을 밝히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 북동부의 산림 고원지대에 거주하며, 라타나키리(Ratanakiri), 몬둘키리(Mondulhiri), 크라티에(Kratie), 스통트렝(Stung Treng), 캄퐁툼(Kampong Thom), 프레아비히어(Preah Vihear) 주에 집중되어 있다.⁵³

선주민의 경우 언어와 교육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피해자 중 선주민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의 공용어인 크메르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일부는 “크메르어를 조금 알아듣지만 말은 못 한다”거나(사례 6) “크메르어를 80% 정도 구사”하는 수준(사례 5)이었다. 특히 문해력이 낮아 공식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도 현지 언어에서 크메르어로의 통역을 한 차례 더 거친 경우도 있었다. 교육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아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문맹 퇴치 교육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사례 7), 전쟁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고령층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했다(사례 9).

또한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많은 선주민들이 토지권 부재, 토지 수탈, 산림자원 접근 제한, 생활비 증가, 경작지 감소,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은행대출, 소액금융대출, 사채 등의 부채 순환에 빠져있었다.⁵⁴ 특히 캄보디아 선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의 전통적 토지에 대한 권리 보장이다. 공동토지권(CLT) 제도 도입 및 토지 소유권의 이원화 문제에 관하여는 아래 4) 가) ‘캄보디아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수성’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수세기 동안 자연자원에 의존해 살아온 공동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일부는 절망적으로 공동체 토지를 매각하거나 불법 벌목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살률과 약물 사용 증가, 가정 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⁵⁵

선주민의 이러한 복합적인 취약성은 특히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교육 기회 상실, 아동 노동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3 IWGIA, “The Indigenous World 2024”, IWGIA, (2024. 4.), 176.

54 위의 글, 180.

55 위의 글, 180.

3) 대출 과정

가) 대출 목적

피해자들은 주로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가장 흔한 대출 목적은 농사나 농장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다. 카사바 농장 투자와 트랙터 구매(사례 9), 추가 토지 구매(사례 5), 고무 농장 구매(사례 10)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주거 환경 개선도 주요 대출 사유였다. 특히 대나무 등 기초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선주민 전통 가옥의 경우 약 2년밖에 건디지 못하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사례 3). 일부는 화장실, 정원, 울타리 설치와 같은 기본 시설 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을 받았다(사례 11). 조사단이 실제 선주민 거주 마을을 방문했을 때, 선주민 대부분이 간이주택 형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닥은 따로 만들지 않고 흙바닥이었고, 벽은 얇은 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벽에 뚫린 구멍은 낡은 포대로 막아놓은 상황이었다. 지붕은 얇은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고, 일부 녹이 슬어 있고 덧댄 부분도 있었다. 건물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튼튼한 집'에 대한 소망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 7> 조사단이 방문한 선주민 거주 마을의 주택 ©손고운(한겨레21)

주거 목적 대출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기존 소득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대출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의 굴레에 빠뜨리고 있었다.

"카사바 농장에 투자하려고요. 카사바 뿌리가 더 잘 자라게 하는 스프레이도 사고 [...] 카사바를 시장에 운반할 트랙터도 사고 농사도 지으려고요. 제 농장이 멀리 있어서 트랙터가 필요했거든요." (사례 9)
"처음에는 ACLEDA 은행에서 고무 농장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 그래서 농장 전체를 사는데 35,000달러가 들었어요. 쌀농사 수확이 좋지 않아서 고무 농장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사례 10)
"온 가족이 지낼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 선주민들의 집은 2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사례 3)
"새 집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유는 집이 너무 낡아서예요. 지붕으로 물이 새고 홍수도 자주 났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고요. 제가 사는 곳은 홍수가 자주 나서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됐어요. 집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거든요." (사례 11)

캄보디아의 광범위한 빈곤과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가구들이 소액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전체 빈곤층의 9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경우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긴급한 자금 수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농업 종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변동과 소득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어, 영농자금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소액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진다.⁵⁶

56 Frank Bliss(주 22), 앞의 글, 19

나) 대출 영업 방식 및 계약 체결 과정

두 은행은 농촌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대출을 권장하고 촉진했다. 대출담당직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방문하여 포스터를 부착하고 명함을 배포하거나(사례 1), 대면 영업을 하거나(사례 13),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낮다”고 광고하는 등, 간단하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기존 대출자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활발했는데, 비전펀드캄보디아(현 캄보디아우리은행)의 경우 “NGO 은행”이라는 이미지까지 활용하며 마을 내 홍보 시 대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사례 9).

"프라삭에서 새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낮다’라는 광고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집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대출담당직원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 같은 것도 있었어요.”(사례 1)
"프라삭 은행 직원이 대출을 광고하러 마을에 왔어요. 직원은 이미 다른 빛이 있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다른 빛들을 갖고 대출이 하나가 되도록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어요.”(사례 13)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여동생이 큰길가에 살았는데, 그 여동생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추천해줬어요.”(사례 12)
"그들은 스스로를 비전펀드라고 했어요. [...] 그들이 말해줬고 큰 간판도 있었어요. NGO가 아니라 은행인데, NGO 은행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NGO가 뭔지도 몰랐어요. [...] 그들이 와서 광고했어요. 내가 마을에서 광고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 네, 저는 그들을 도와 마을에서 광고했고, 그들 모두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 아니요, 그저 보답으로 8,000달러를 대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NGO 은행은 대출받기가 매우 쉽다고 말했어요." (사례 9)

그러나 대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 체결 시 대출담당직원들은 원금과 월별 이자율, 상환 일정 정도를 설명했을 뿐,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율, 미상환시 담보 처리 방식 등 계약의 세부 조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주민들의 경우 크메르어로만 계약서 및 설명이 제공되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출을 체결하는 경우



<사진 8> 캄보디아우리은행 계약을 들고 있는 선주민 피해자 ©손고운(한겨레21)

가 많았다. 크메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주민의 경우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접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어 금융 문해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들은 금융 상품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대출담당 직원의 제한적 설명에만 의존하여, 그마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 피해자는 대출담당직원이 계약서를 크메르어로 읽어주었지만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출에 이자가 붙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았지만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몰랐다고 한다(이상 사례 6). 다른 피해자는 10,000달러를 빌린 후 3,000달러를 상환했는데 왜 대출 잔액이 7,000달러가 아닌 8,000달러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은행이 그렇게 말해주었다고 했다(사례 9). 또 다른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면담 과정에서 해당 개념을 정리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담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면서 CLT를 담보로 삼았으나 은행이 토지를 압류할 경우 농작물만 압류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이상 사례 3).

"그들은 크메르어로 계약서를 읽어주었지만, 저는 읽거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밖에 몰랐습니다. 1,000달러를 빌리면 이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사례 6)

"그들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납부 일정과 원금, 이자가 얼마이지만 설명해주었어요." (사례 7)

(10,000달러를 빌린 후 3,000달러를 상환하였다고 하는데 왜 대출 잔액이 8,000달러인지 질문하자) "저는 몰라요. 그들이 말해줬어요. 저는 읽고 쓸 줄 몰라요." (사례 9)

"면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농장에 재배하는 작물들요. 은행이 토지의 작물만 압류한다면, 은행은 토지 자체는 가져갈 수 없어요. 만약 은행이 와서 토지를 가져가려고 해도, 은행은 제 작물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은행은 한 번도 가져가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은행에 상환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례 3)

다) 대출 금액의 증가

대출 금액은 소액에서 시작하여 점차 금액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은행을 변경하며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같은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2015년 ACLEDA 은행에서 200만 리엘(약 500달러)을 대출받았고, 2017년 Kasikorn 은행에서 600만 리엘(약 1,500달러)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2018년 프라삭에서 3,000달러를 대출 받은 후 2019년 같은 은행에서 5,000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장인어른의 자살로 인한 장례식 비용 사용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2022년에는 KB프라삭은행에서 8,000달러라는 큰 금액을 대출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했으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이상 사례 5).

다른 피해자는 2015년경 프라삭에서 첫 대출을 받았고(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 함), 이후 2017년 12,000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2020년에는 기존 대출의 원금 7,710달러를 갚기 위해 21,000달러를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2022년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수입이 끊기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토지를 부동산에 내 놓은 상황이다(이상 사례 11).

위 사례와 같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은 채무자를 부채의 순환고리에 가두는 악탈적 대출 관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단기적 수익을 위해 고객의 장기적 금융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금융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대출금의 액수 자체도 캄보디아의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인 1,810달러와 비교하면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다.

"2019-20년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어요. 2022년에 이전 대출을 갚기 위해 8,000달러를 새로 대출받았어요. 목적은 농사였죠 [...] 2019-20년 대출 당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장인어른이 자살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고, 농사 수확도 좋지 않았어요." (사례 5)

"처음에는 40만 리엘을 빌렸고, 두 번째는 80만 리엘, 세 번째는 600만 리엘을 빌렸어요."

"AMK 대출을 모두 갚은 후, 2015년에 Sathapana 은행에서 60만 리엘을 빌렸어요. Sathapana에서 2년간 대출을 받았고, 상환 후 2017년에 LOLC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LOLC에서의 첫 대출은 3,000달러였어요." (사례 7)

"처음에는 ACLEDA 은행에서 고무 농장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프라삭에서 돈을 빌려 ACLEDA 대출금을 갚았어요." (사례 10)

"두 번째 대출은 2017년 프라삭에서 12,000달러를 받았고 이자율은 1.25%였어요. [...] 세 번째는 2020년에 21,000달러를 받았고 이자율은 1.1%였어요. [...] 두 번째 대출을 전혀 갚지 못했어요, 더 많은 대출을 요청했거든요. [...] 세 번째 대출로 두 번째 대출을 갚았어요. 두 번째 대출은 이제 끝났어요. [...] 2020년에 두 번째 대출의 남은 원금 7,710달러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았어요." (사례 11)

"2020년에 프라삭에서 3만 달러를 빌렸어요... 이 돈으로는 집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라삭에서 7천 달러를 더 빌렸어요. 은행이 제가 집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보고 두 번째 대출을 승인해 줬어요." (사례 14)

<사진 9> 캄보디아 농촌 모습 ©손고운(한겨레21)



4) 담보 설정 관행

가) 캄보디아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수성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담보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캄보디아 토지 소유권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토지 등록 체계상 토지의 소유권은 소위 ‘경성소유권(hard title)’과 ‘연성소유권(soft title)’의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⁵⁷ 경성소유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급되는 공식적인 소유권 증명이 있는 경우로 체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면,⁵⁸ 연성소유권은 지방 관청에서 발급되는 관습에 의한 사용권 및 점유권 증명을 말하며 주로 서류의 존재를 통해 연성소유권의 존재를 증명한다.⁵⁹

두 은행 모두 토지에 대한 경성소유권, 연성소유권 두 형태의 소유권을 모두 담보로 삼고, 토지를 담보로 삼을 경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⁶⁰

57 Chaing Sinath & Neuv Socheata, “Cambodia” (Magnus Andersson et al. 편집), The Routledge Companion to International Housing Markets, London: Routledge (2022), 35-36.

58 경성소유권은 캄보디아 국토관리부(Ministry of Land Management)의 토지부서에서 발급된 소유권 증명으로, 캄보디아에서의 재산권에 대한 공식 증명이다. 1992년 토지법 제정 전 발급된 토지권인 ‘토지 점유권 및 사용권(land possessory rights and use title)’, 2002년 체계적인 토지 등록 체계가 수립되기 전에 발급된 토지권인 ‘부동산 점유권(immovable possessory right title)’, 체계적인 토지 등록 체계 수립 후 발급된 “부동산 소유권 증명(certificate of immovable ownership)”이 모두 경성소유권에 포함된다. (Chaing Sinath & Neuv Socheata, 앞의 글, 35-36).

59 연성소유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군(district)과 면(commune) 단계에서만 발급된다[Chaing Sinath & Neuv Socheata, 앞의 글, 35-36]. 연성소유권은 반드시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또는 공동체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과 점유권에 대한 증명을 부여할 수 있다[IPS Cambodia, “The Basics of Soft Title and Hard Title in Cambodia”, <https://ips-cambodia.com/soft-title-and-hard-title-in-cambodia/> (2023. 3. 8.)]. 점유권을 증명하는 종류의 연성소유권은 주로 공식적인 법적 체계보다는 관습에 의한 토지 사용이 익숙한 농촌 지역에서 사용된다[IPS Cambodia, 앞의 글]. 연성소유권 거래를 할 때에는 면이나 군의 장이 서명을 하고 서류를 봉합하는 절차가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김대인, “개발과 인권의 조화 관점에서 본 토지법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2010), 112]. 연성소유권은 중앙정부나 공식적 기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IPS Cambodia, 앞의 글]. 이렇듯 토지에 대한 연성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캄보디아 민법 제242조에서 ‘등기부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로서 점유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승계 받고 점유증명서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소유권에 준한 일부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다[이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제60권 제5호 (2011. 1.), 190].

60 KB프라삭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삼을 경우 ‘토지 증서 원본(original land title deed)’, ‘토지 소유권 증명서 원본(original land ownership certificate)’ 문서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연성소유권, 지적청(cadastral office)에 저당권을 등록한 경성소유권, 지적청에 저당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성소유권으로 분류하여 대출 규모를 조정한다[KB PRASAC Bank, “Credit Policy” (2024. 1.), 15]. 캄보디아우리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삼을 경우 ‘경성 담보(hard collateral)’로서는 지적청에 의해 발급된 토지 증서 원본(official land title deed), ‘연성 담보(soft collateral)’로서는 LMAP(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Project) 영수증(토지 증서 원본을 받은 데 대한 영수증), 면 지도자가 인정하고 군에서 foot note를 단 토지소유권, 면 지도자가 인정한 토지소유권으로서 지방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서, 군 지도자가 인정한 토지소유권 문서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WOORI BANK (CAMBODIA) PLC., “Manual of Credit Operations” (2024. 7. 1.), 26].

캄보디아 선주민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하다.

캄보디아 선주민의 문화, 전통, 정신, 정체성은 토지 및 천연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선주민은 농업이나 임업, 식물 채취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토지에 의존하고, 숲을 ‘영혼의 숲’으로 보고 고인을 매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⁶¹

캄보디아 선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주민에게 관습에 따른 고유한 형태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캄보디아 선주민은 전통적으로 토지를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에서 함께 점유, 관리, 사용해왔기 때문에, 캄보디아 토지법(2001년 개정)은 선주민에게 공동토지권(communal land title, 이하 “CLT”)을 부여하였다.⁶²

토지법 제23조는 선주민 공동체를 정의하고, 선주민 공동체가 전통 관습에 따라 부동산을 계속 관리할 권리를 인정한다.⁶³ 제26조는 선주민 공동체의 부동산을 국가 공공 재산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선주민 공동체에 집단적 소유권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선주민 공동체가 집단적 소유권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한다.⁶⁴ 토지법 제27조는 선주민 공동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 목적은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의 발전 촉진과 구성원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자유 보장에 한정하고 있다.⁶⁵

61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IFAD) and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Country Technical Note on Indigenous Peoples’ Issues: Kingdom of Cambodia” (2023), 6-7.

62 Jack Brook, “Cambodia’s Indigenous communities renounce communal land titles for microloans”, Mongabay <https://news.mongabay.com/2024/01/cambodias-indigenous-communities-renounce-communal-land-titles-for-microloans/> (2024. 1. 31.).

63 캄보디아 토지법 제23조
선주민 공동체라 함은 캄보디아 왕국 영토 내에 거주하며 그 구성원들이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단결을 표명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며, 관습적인 집단적 사용 규칙에 따라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공동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들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은 그들의 전통 관습에 따라 그들의 공동체와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하 캄보디아 토지법 규정은 2001년 개정된 내용이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영문본을 필자가 재번역하였다(세계법제정보센터, “캄보디아: 토지법(Land Law)”, https://world.moleg.go.kr/web/wii/lgsllInfoReadPage.do?CTS_SEQ=35963&AST_SEQ=165& (2022. 2. 18.)).

64 캄보디아 토지법 제26조
제25조에 명시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선주민 공동체에 집단적 소유권으로 부여된다. 이 집단적 소유권에는 개인 소유자가 누리는 소유권의 모든 권리와 보호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체는 국가 공공 재산인 집단적 소유권을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처분할 권리가 없다.

65 캄보디아 토지법 제27조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해당 구성원이 자유롭게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가 사용하는 토지의 적절한 지분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가 공공 재산의 일반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CLT 제도는 「유엔 선주민 권리에 대한 선언」⁶⁶(이하 “선주민권리선언”)에서 선주민이 관습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따른 것이다.⁶⁷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캄보디아 선주민에게 CLT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캄보디아 선주민의 CLT 신청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⁶⁸ OHCHR은 캄보디아 선주민에게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주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자 선주민이 고유한 민족으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CLT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⁶⁹

그러나 선주민 토지를 CLT로 정리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장기화되고 있어 선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488개 선주민 공동체 중 단 40개(8.2%)만이 CLT를 획득했다. 반면 기업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등을 위한 경제적 토지양허(ELC)⁷⁰는 신속하게 승인되어,⁷¹ 선주민의 생존권과 문화 보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⁷²

CLT는 선주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액금융 담보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캄보디아 선주민 사이에서도 CLT 등록이 되기 전에 이미 토지의 연성소유권을 담보로 삼아 이용하고 있던 소액금융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 CLT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⁷³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면담 대상 피해자 중에서도 CLT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담보로 삼거나 매각한 사례, 담보 대상 토지가 CLT인데도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담보가 된 사례 등이 있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66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1/295, (2007. 9. 13.).

67 Koem Chhuonvuoch, Indigenous Communal Land Titling in Cambodia, Heinrich Böll Stiftung Cambodia <https://kh.boell.org/en/2022/08/10/indigenous-communal-land-titling-still-hundred-years-go> (2022. 8. 10.).

68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in Cambodia,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s://cambodia.ohchr.org/en/economic-social-rights/rights-indigenous-peoples> (2015. 1. 26.).

69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ambodia, “Collective land titling in Cambodia - a case for reform?”, https://cambodia.ohchr.org/iplands/wp-content/uploads/2021/05/CLT-RECOMMENDATION_ENG.pdf (2020. 8.).

70 정부가 수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산업적 농업을 위해 토지를 개간할 권한을 부여하는 장기 임대를 말한다. 이로 인하여 토지 침범,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in Cambodia, “Economic and other land concessions”, <https://cambodia.ohchr.org/en/economic-social-rights/economic-and-other-land-concessions> (2015. 1. 26.)).

71 2023년 9월까지 3개의 ELC에 25,990헥타르가 승인되었으며, 1996년 이후 산업농업과 광업을 위해 총 425만 헥타르가 ELC로 부여되었다. (IWGIA, “The Indigenous World 2024”, IWGIA, (2024. 4.), 177).

72 특히 CLT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수력발전 댐, 광산 개발, 관광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도 부재하여, 선주민 공동체의 토지가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IWGIA, 앞의 글, 178).

73 Ian G. Baird, “Indigenous communal land titling, the microfinance industry, and agrarian change in Ratanakiri Province, Northeastern Cambodia”, 51(2)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267-293 (2023).

나) 토지 담보 설정 실태

은행들은 소액대출에 있어 토지를 담보로 요구하고 있었다. 일례로 KB프라삭은행은 프라삭 마이크 로파이낸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2021. 10.부터 2024. 6.까지 취급된 소액대출 431,978좌 중 부동산(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담보로 삼은 대출은 431,522좌로 99.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⁷⁴

면담 대상 피해자들은 모두 농지, 주택 대지 등 토지를 담보로 삼아 소액대출을 받았다. 농지의 경우 일부 경성소유권이 있었으나 연성소유권인 경우가 더 많았고, 주택 대지는 대부분 연성소유권이었다.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인(사례 10), 어머니(사례 14) 등 가족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액금융의 주고객층이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민이고,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선주민도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요 자산이자 생계 수단인 토지를 소액대출의 담보로 잡는 것은 농민의 소득 창출 능력 상실, 심각한 생계 위기 등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선주민 가운데에는 담보로 삼은 토지가 CLT였던 적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CLT였으나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 소유권을 발급받은 경우(사례 1, 사례 4),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 소유권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사례 2)가 있었다. CLT를 담보로 삼았는데 은행이 토지를 압류할 경우 농작물만 압류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사례 3)도 있었다. 크메르어를 할 줄 모르는 선주민에게 대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한편 대출담당직원이 담보 토지의 CLT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거나 대출자에게 정확하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담보 토지를 팔라는 대출담당직원의 압박에 담보 토지가 공유 토지라서 팔 수 없다고 말했으나, 대출담당직원이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이 피해자는 이후 수도 프놈펜의 변호사로부터 토지를 팔지 않으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공지하는 우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사례 2).

가) ‘캄보디아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수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토지법 제27조는 선주민 공동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목적은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의 발전 촉진과 구성원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자유 보장에 한정하고 있다. 은행이 CLT 토지를 분할하여 담보로 삼는 경우는 이러한 토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크메르어를 할 줄 모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등의 선주민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CLT였던 토지를 쉽게 담보로 삼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대출하여 구입할 토지를 미리 담보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10은 고무 농장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는데, 고무 농장 토지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공하여 고무 농장 토지를 담보로 삼았다.

74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KB프라삭 관련 질의(7.30)에 대한 답변서”, 김남근 의원실 제출 자료 (2024. 8. 2.).

자신의 주택 대지도 함께 담보로 삼았다. 장인의 집 대지도 담보로 제공했는데, 고무 농장 토지를 담보로 삼는 작업이 완료되면 장인의 집 대지 담보는 반환하기로 했다.

한편 첫 대출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대출 상환 후에도 은행이 담보 반환을 지연했고, 이로 인해 같은 은행에서 두번째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은행이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사례 6). 토지 소유권 체계가 미비하여 토지의 소유권 증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13의 경우 담보로 삼은 3개의 토지 중 주택 대지 하나의 소유권 증서가 없어, 대출담당직원이 소유권 증서를 만들라고 해 소유권 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삼았다. 이와 같이 두 은행의 토지 담보 설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5) 상환 과정

가) 대출금의 사용처

피해자들은 대체로 대출금을 대출 명목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농업 투자(농기구/묘목/제조제 구입, 일꾼 고용, 토지 구입, 고무 농장 구입), 주거비(집 건축/보수), 소규모 창업 자금(재봉틀/옷감 구입)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대출금은 생계비(자녀 학비, 식량 구매), 의료비(가족 질병 치료)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생산적 투자(농업, 소규모 사업)와 생계형 지출(주거, 의료, 교육)이 혼재되었다.

특히 선주민들의 경우 문화적 의무 이행에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라타나키리 지역의 선주민들은 장례나 결혼, 질병 치유 등을 위해서 버팔로나 소, 돼지, 닭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다. 치유하기 어려운 병과 같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버팔로를, 나머지 경우에는 소, 돼지, 닭을 제물로 바치며,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먹더라도 약이 잘 들지 않을 때에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⁷⁵

사례 6에서는 집을 짓는 중 집에 번개가 떨어졌는데 이는 나쁜 운을 의미하므로 토착 문화에 따라 검은 물소와 흰 물소를 사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고 한다. 사례 3에서는 자녀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소나 버팔로, 닭 등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냈다. 사례 4에서는 원래 대출의 목적은 농장을 넓히는 것이었으나 아내가 아픈 바람에 농장에는 대출금의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내의 치유를 위한 제사를 위한 돼지, 닭, 버팔로 구입, 집 건축 완료, 식료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했다. 식료품 구입비는 아픈 아내를 돌보기 위해 숲에 가서 채소를 구해오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었다.

75 May Titthara and Aisha Down, “A Prayer from Rattanakiri”, Khmer Times, <https://www.khmertimeskh.com/34022/a-prayer-from-rattanakiri/> (2015. 12. 28.).

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피해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은 기후변화(사례 1), 토양 생산성 저하(사례 4), 가뭄 피해(사례 13)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줄고, 작물에 따라 가격도 감소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

한 피해자는 “토양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비료가 부족해” 수확량이 줄었고, “카사바 가격이 kg당 300 리엘에서 100 리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다(사례4). 다른 피해자는 “캐슈넛 수입이 1,500만 리엘에서 4백만 리엘로 감소했고, 카사바도 계절당 9백만-1천만 리엘밖에 벌지 못해” 연간 1,200만 리엘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캐슈나무가 원래 11월에서 1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꽃이 말라 떨어져, 더 적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이상 사례 7). 고무 농장을 시작했으나 “나무가 병들어 수액이 나오지 않고 강풍에 쓰러졌다”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고(사례 10) “경제위기로 과일과 망고 가격이 폭락했고 가뭄으로 모든 작물이 실패”했다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다(사례 13). 수익이 1년에 6백만-9백만 리엘에서 350만 리엘로 급락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5).

캐슈넛은 26~37° C에서 잘 자라지만, 2024년 전기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38~41° C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캄보디아캐슈넛협회(Cashew Nut Association of Cambodia) 대표는 캄보디아의 캐슈넛 생산량이 1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⁷⁶ 한편 국제 캐슈넛 가격도 하락했다. 2024년 2월 기사에 따르면 라타나키리 지역에서 캐슈넛을 기르는 농부는 캐슈넛 가격이 전년도 1kg당 1.25~1.37달러에서 당해연도 1~1.2달러로 약 20% 정도 하락했다고 말했다.⁷⁷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있었다. 위 고무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보험설계사 일도 병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을 구하기 어려워져” 수입이 끊겼다고 했다(사례 10).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이 실직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사례12). 이와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UNICEF 등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캄보디아 가정 중 월소득 150달러 미만인 가정은 28%였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에는 그 비율이 52~68%로 증가했다.⁷⁸

개인적 요인으로서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제사비 지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비용 지출(사례 5), 노령화로 인한 노동 능력 감소(사례 6) 등이 있었다. 생계에 기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돈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고(사례 14),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해고 당하여 수입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11).

76 Ou Sokmean and Meng Seavmey, “Rising Cambodian Cashew Sector Hindered by Climate Change and Low Processing Capacities”, Cambodianess, <https://cambodianess.com/article/rising-cambodian-cashew-sector-hinders-by-climate-change-and-low-processing-capacities> (2024. 11. 5. 확인).

77 위의 글.

78 UNICEF, World Food Programme, and Asian Development Bank, “COVID-19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Phase II Report” <https://www.wfp.org/publications/cambodia-covid-19-socio-economic-impact-assessment-phase-2-report> (2022. 12. 14).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상환 실패가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위험 요인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에 의존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기후변화, 작물 가격 변동, 토양 악화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10> 고무 농장의 모습

다) 상환을 위해 취한 조치

피해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환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나섰는데, 한 피해자는 “5-6개월 전부터 재활용품 수집 일을 시작해 빈 병 등을 팔아” 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우기라 수집 일을 못하고 있지만 건기가 오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사례 4). 기후 변화로 카사바 농사 수확이 줄어들어 타격을 입은 피해자는 말바넛⁷⁹을 따서 상환에 보태고 있다고 했는데, 말바넛을 따러 가는 장소에서는 “야생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발자국도 보일 정도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사례 5). 캐슈넛 농사 수확이 줄어 말바넛을 따거나(사례 7) 원래 농부이지만 일용직 노동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

장기적으로 손해 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캐슈넛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있었는데, “직접 농사지으면 3,500 달러를 벌 수 있는데 임대료로는 2,000 달러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사례 3). 상환을 위해 급전이 필요해 직접 농사짓지 않고 농장을 임대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5-6개월 전에, 빈 병을 줌는 재활용품 수집 일로 직업을 바꿨어요. 팔아서 돈을 벌고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은 대출금을 1,700 달러로 줄일 수 있었어요.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예전같이 재활용품 수집 일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잡초를 좀 제거한 후에, 우기가 끝나면 재활용품 수집 일로 돌아갈 거예요. 예전에 저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전보다 안 좋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무섭고, 그래서 농사를 하러니 흙이 예전같지 않아서, 재활용품 수집 일을 해요. 집집마다 다니며 돈을 벌어요.” (사례 4)

“원래 카사바를 재배하면 한 시즌(1년)에 6백만-9백만 리엘을 벌어서 은행에 돈도 갚고 음식을 살 돈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시즌에 350만 리엘밖에 못 벌어서, 아이들 학교 보낼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숲에 가서 말바넛을 따기로 했어요. 그래도 원금은 못 갚고 있어요. [...] (아내) 말바넛을 따는 곳에서는, 밤에 맹수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맹수 발자국도 볼 수 있어요.” (사례 5)

많은 피해자들이 사채를 이용했는데,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 한 피해자는 “100만 리엘을 빌리면 매달 8만-10만 리엘의 이자를 내야 했다”고 했다(사례 7). 다른 피해자는 “월 10-12%의 이자에, 한 달만 연체되어도 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되어 더 높아지는 복리 계산이 적용되었다”며 “현재 사채 빚이 5천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사례 10). 총 세 번의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5백만 리엘(담보: 딸의 주택 대지), 두 번째는 150만 리엘(담보: 둘째 아들의 주택 대지), 세 번째는 100만 리엘(담보: 딸의 농지)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례 피해자는 “은행에서 화를 내며 ‘재산이 있는데 왜 팔지 않느냐’며 오토바이를 50만 리엘에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사례 9).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승려 학교에 다니던 아들이 “어머니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일을 해서 은행 빚을 갚겠다”며 9학년을 마치고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중국계 회사에서 월 300 달러를 받고 일하면서 400 달러를 상환했다고 한다(사례 13). 다른 피해자는 16세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카사바를 나르는 일을 해야 했다(사례 9).

“은행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사채를 찾아야 했어요. 지인이 아니라, 사채로 돈을 버는 전문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율은 월 10%이고, 12%인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이자율은 올라가고 이자가 원금에 합해져 계산되어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요. 저는 지금 사채업자에 5천 달러를 빚지고 있어요.” (사례 10)

“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은 승려였어요. 승려 학교 9학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제 아들은 승려 학교 9학년을 마치고 저에게 “엄마, 제가 공부를 멈추고 일자리를 찾아서 은행에 갚을 돈을 구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승려가 되는 공부를 그만두고 중국의 온라인 회사⁸⁰에 취직해서 한 달에 300 달러를 벌었어요. 은행에 400 달러를 갚았어요.” (사례 13)

“제 딸은 열심히 일하다가 기관지염에 걸렸어요. 제 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카사바 포대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체포될 거라는 협박을 받아서, 제 딸은 엄마를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어요. [...] (딸) 저는 2020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8학년이었어요.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지금 11학년이었을 거예요. 8학년은 마쳤고, 계속 공부를 했다면 9학년이 될 예정이었어요.” (사례 9)

79 Malva nut. 아욱과 벽오동아과 반대해속에 속하는 나무 열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전통 약재로 쓰인다.

80 역자 주: 여기서 “온라인 회사”는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장을 의미함.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출 상황에 대한 압박이 가족의 교육 기회 포기, 위험한 일자리 선택, 가족 자산의 담보 제공 등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 10-12%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 이용은 채무자들을 더 깊은 부채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이 크다. 또한 자녀의 학업 중단과 같이 장기적으로 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출 상황에 대한 압박이 가구의 경제적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6) 추심 과정

가) 대출담당직원의 강압적 추심 행위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인 추심 행위를 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장시간 체류하며 압박하는 것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대출담당직원 2-3명이 함께 집에 방문하여 2-3시간 동안 머무르며 상황을 압박했고, 하루에 오전, 오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사례 10). 늦은 시간(오후 6시 이후)까지 전화로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13).

특히 심각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다.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독촉하여 이웃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고(사례 10), 허락 없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기도 했다(사례 5). 피해자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11).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는 집에 있던 자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5).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바람에, 자녀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사례까지 있었다(사례 13).

“그들은 오토바이 옆에 서서 손을 허리에 얹고 크게 말했어요. 돈 빌릴 때는 자기들이 쉬워보였을지 몰라도, 대출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행태에 우리에게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어요. 모두가 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체면을 잃었어요. 가끔은 두 개의 오토바이를 타고 세 명이 와서 3시간 동안 머무른 적도 있어요. [...] 그들은 보증인의 집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해요.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에서는 모두가 집에 머무르고 있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나와서 심각하게 쳐다봐요.” (사례 10)

남편: “제가 집에 없을 때, 제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제 아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내: “은행에 전화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사례 5)

“같은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이 같은 학교에 가요. 대출담당직원이 집에 왔을 때, 동네 어린이들이 그 상황을 봐요.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마을 지도자들과 마을의 어린이들은 집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대출담당직원이 우리에게 소리지를 때 와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 아들을 비웃으며, 엄마가 빗이 있기 때문에 대출담당직원들이 너희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해요. 제 작은 아이는 가끔 저에게 ‘땅을 팔아서 돈을 갚고, 다시는 대출하지 말자’고 말해요.” (사례 13)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한 사례에서는 은행 직원이 보안요원을 동반하여 여성 노년 피해자를 따라 숲으로 찾아가 체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사례 9).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이 사망해서 상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말에 대출담당직원이 남편이 진짜 사망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사례 14).

“저는 숲에서 식재료를 위한 잎사귀를 따고 있었어요. 보안요원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은행 직원들이 와서 갚을 돈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숲속까지 따라왔어요. 제 땅과 집을 팔라고 했어요. 은행 직원은 제가 순응하지 않으면 보안요원이 저를 체포할 거라고 했어요. 보안요원은 저에게 “할머니 감옥 가고 싶으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거의 심장마비에 걸릴 뻔 했어요.” (사례 9)

“대출담당직원 두 명이 제가 자는 방에 와서 제 남편이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제 방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제 남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려고 제 남편의 유해를 보여주고, 지방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보여줬어요.” (사례 14)

대출담당직원들의 발언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했을 때 “죽어도 자녀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사례 9). 다른 사례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사례 13),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7).

“저는 은행 직원에게 저한테 계속 상환하라고 압박하면, 약을 먹고 자살할 거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당신이 죽더라도 갚을 돈은 찾아야 한다.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아이는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례 9)

이러한 강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대출담당직원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나(사례 1),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사례 9).

“요즘 은행 직원이 잘 찾아오지 않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이 많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거나 다른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요. 은행 직원이 화가 나서 저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할지도 몰라요.” (사례 1)

은행 직원들이 이토록 강압적으로 추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는 질문에, 한 피해자는 은행 직원들도 그 관리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임금과 보너스가 깎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사례 13).

나) 토지 등 담보 강매 압박

대출담당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보물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사례 1, 2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공유 토지를 매각하라고 압박받았다. 피해자는 대출담당직원이 땅을 팔라고 했을 뿐 아니라, 수도 프놈펜에 소재한 은행 본부의 변호사로부터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사례 2). 다른 사례에서는 대출담당직원이 계속 찾아와 토지를 팔라고 압박하고, 토지를 팔겠다는 각서 같은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사례 5). 한 선주민 피해자는 KB프라삭은행 직원이 집에 계속 동의 없이 들어와 20~30분씩 머물며 토지와 주택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토지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더 싼 가격으로 팔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 부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사단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주 월요일에 크메르인 구매자와 만나 헐값에 토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이상 사례 8). 다른 선주민 피해자는 KB프라삭은행 직원이 담보 토지를 판매하도록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사채를 받아서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했고, 결국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 토지를 헐값이라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사례 7).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매각도 강요했다. 사례 3에서는 집과 주방 건물을, 사례 4에서는 농기계와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사례 5에서는 소, 물소, 닭 등 가축을 팔라고 요구했다. 대출담당직원이 직접 침대와 탁자, 의자 등 가구를 헐값에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9).

“대출담당직원이 다시 와서 땅을 팔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땅을 파는 데 며칠이나 걸리냐고 물어봤어요. 대출담당 직원은 은행 관리자와 함께 와서 제가 땅을 팔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관리자의 행동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관리자는 손을 허리에 얹고 거칠게 말했고,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적어도 각서의 사본을 주거나 제가 각서의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압박 때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각서의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사례 5)

“우리에게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집에 있는 기계와 다른 물건들을 팔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팔면, 아무 물건도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농사에 필요한 기계를 팔라고 강요했고, 저는 압박을 느꼈어요. 농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계속하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척 했어요. 그들은 돈을 갚기 위해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팔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아도 전체 돈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팔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대출담당직원은 ‘난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했어요.” (사례 4)

“침대와 의자까지, 대출담당직원이 직접 싼 가격에 사갔어요. 좋은 가격에 사줄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보통 의자와 침대가 아니었어요. 좋은 목재로 만든 거예요. 침대 하나에 1,000달러 이상인데, 250달러에 사갔어요. 제가 제때 상환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3개의 침대, 1개의 작은 탁자, 30개의 원목 의자. 의자는 하나의 큰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모두 귀한 좋은 목재로 만든 거예요. 대출담당직원 한 명이 사갔어요. 돈은 보지도 못했어요. 대출담당직원은 제가 빌린 돈에서 차감할 거라고 했어요.” (사례 9)

피해자가 담보물 매각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사례 1), 지방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사례 5).

다) 지방 관청을 통한 압박

은행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지방 관청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사례들은 모두 선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의 사례였는데, 인간관계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방 관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촌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지방 관리들의 개입은 주로 면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한 피해자는 은행이 면에 민원을 제기하여 면사무소에서 면담이 소집되었다. 대출담당직원들과 면장이 참석했고, 해당 면장에게 토지를 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면장이 대출담당직원과 협력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이상 사례 1).

다른 피해자는 은행이 면 경찰서에 신고해, 면 경찰서에서 면담이 열렸다. 대출담당직원 뿐 아니라 지역 은행 책임자, 면 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참석했다. 경찰서장은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대출담당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치심을 느끼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논의하는 게 낫긴 하지만,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인 만큼 경찰서에서 다루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상 사례 10).

“면사무소 면담에는 3명의 대출담당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면사무소로 갈 때, 제 딸들은 제가 체포될까봐 걱정했어요. 면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어머니와 딸들이 같이 가고 싶어한다고 물어봤지만, 거절당했어요. 미팅에는 면장은 없고, 부면장이 있었어요. 대출담당직원은 저에게 갚을 돈을 찾으라고 했어요. 제가 땅을 팔아야 하는 대상은 부면장이었어요. 부면장과 대출담당직원들은 저에게 대출을 상환할 1주일의 기간을 주었어요.” (사례 1)

“경찰이 특별히 나쁜 말을 쓴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대출에 관한 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니까, 민원을 면에 제기하는 건 몰라도 경찰에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례 10)

추심 과정에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면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피해자는 돈을 갚고 싶으나 기간 내 갚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지만, 면 지도자는 빚을 갚을 돈을 찾으라고 할 뿐이었다(사례 4).

이렇게 은행은 지방 관청과 유착하여 추심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를 넘어 뇌물 등의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정도 있었다.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에서 2024년 기준 180개국 중 청렴한 순서 158위를 기록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¹ 현지 인권 단체는 위와 같은 지방 관청을 이용한 면담 후에 대출담당직원이 공무원에게 술을 사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KB프라삭은행의 부실채권 추심 과정 가이드라인에는 부실채권 추심 과정에 있어 지방 관청의 개입을 구할 때 “KB프라삭 경영진의 동의 없이는” 지방 관청에 ‘혜택’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⁸²

7) 구제 절차

은행들은 대출 구조조정 등 자체적 구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접근성과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도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지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은행의 자체 구제 절차 또는 캄보디아중앙은행의 중재 절차를 통해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추심 압박이 감소한 사례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상황이 개선될 정도는 아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지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를 요청하였는데, 사례 4의 경우 은행에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여 이자율이 월 1.3%에서 월 1.0%로 감면되었다. 사례 12의 경우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연장이 되었고 이자만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사례 10의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은행측에서 새로운 상환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2개월치 이자와 연체료를 원금에 추가하고 이자율은 0.90%에서 0.95%로 올라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

81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ambodia”,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4/index/khm> (2025. 4. 20. 확인).

82 KB PRASAC Bank, “Procedure on Loan Recovery”, KB PRASAC BANK (2023. 1.).

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은행이 피해자들의 채무 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5의 경우 2024년에 은행에 상환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틀 정도만 연기되었고, 사례 11의 경우 은행에 대한 대출 기간 연장과 월 상환액 감액 요청이 모두 거절되었다. 사례 13의 경우 2024년 1월 및 2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상환 연기를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피해자들은 현지 인권 단체를 통하여 캄보디아중앙은행의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사례 1, 2의 경우 마을 차원에서 중앙은행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등에 16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이자율을 월 0.75%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추심 압박이 감소하였다. 사례 13의 경우 중앙은행에 중재 요청을 한 후 은행이 4개월간 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사례 14의 경우 중앙은행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은행의 추심 압박이 감소하였다. 한편, 중앙은행을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응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사례 11).

"은행 직원이 이틀마다 집에 찾아왔어요. NGO 담당자분이 중앙은행과 내무부에 민원 제기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후로는 대출담당직원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니다. 2년이 지났네요." (사례 1)

"월 1.5%에서 0.75%로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1.3%로 조정해 주었어요. 은행이 상환 연기를 1주일만 해주었고요. 1년 가까이 상환을 하지 않았지만 대출담당직원이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사례 2)

"2024년에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00만 리엘의 원금을 갚을 수 없었고, 캐슈넛과 카사바 수확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은행에 연기와 새로운 상환 문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원금을 갚으라고만 했어요. 연기를 요청했는데 은행은 1-2일만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닭이나 소, 아무거나 팔라고 했어요. 저는 소가 없다고 했죠." (사례 5)

"2024년 초부터 돈을 갚기 어려워서 차와 오토바이를 팔아서 은행에 갚았는데 나중에 3, 4월에는 전혀 갚을 수 없게 되었어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은행이 '3, 4월 연체분은 이자와 연체료를 원금에 추가하고 이자율도 0.90%에서 0.9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이 늘어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사례 10)

8) 영향 및 피해

가) 경제적 영향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었다. 특히 토지를 급매하는 경우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한 피해자는 대출담당직원의 압박으로 토지를 급매하는 바람에 17,500달러 상당의 토지를 10,000달러에 매각해야 했다(사례 8). 토지를 잃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채집 활동을 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5).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농사지를 땅이 더 이상 없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할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니까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요. 아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례 5)

"우리 선주민들, 농부들에게 땅은 생명이예요. 땅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곳이죠. 땅은 우리가 죽어서 묻힐 곳이기도 해요. 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례 6)

"급하지만 앓았다면 7헥타르의 땅을 17,500 달러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급매여서 10,000 달러에밖에 팔 수 없었어요. 이제 최종 가격이 정해졌고, 그 땅은 10,000 달러에 팔릴 거예요.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죠. [...] 은행 직원들이 계속 위협하고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자를 찾았어요. [...] 1헥타르만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구매자들은 최소 5헥타르에서 20헥타르 정도의 큰 땅을 원해서 1헥타르만 파는 게 어려워요." (사례 8)

"회사가 내 땅을 가져갔고, 은행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때로는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회사는 우리의 땅을 모두 가져갔어요." (사례 9)

"대출 이후 삶이 100%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상황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례 12)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월 상환액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퇴근 후에 만나자고 미루더니 [...] 제 신분증과 대출 상환 계획서를 가져가고는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더니 요청이 수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월 200달러로 상환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었죠. [...]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앙은행이 텔레그램으로 프라삭 은행에 메시지를 보내서 '상환 이력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도 잘 갚아왔으니 요청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중앙은행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은 들어줬는데도요." (사례 11)

"대출금이 8,000달러였는데, 3년에서 9년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고 이자율도 낮춰달라고 했어요. 이자율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했죠. [...] 은행이 연장을 수락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자만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이자만 납부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해줬습니다." (사례 12)

"캄보디아중앙은행한테 연락한 이틀 후에 대출담당직원이 상관과 함께 와서 말하길, '왜 중앙은행에 민원을 넣었느냐'고 했어요. 저는 당신의 행동을 신고한 게 아니라 그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죠. 이후 그들이 4개월 상환 연기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전 옥수수 농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1개월치 상환금만 낼 수 있었어요. 그때 아들도 직장을 잃었고, 제가 아프기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상환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은행 직원들이 더 이상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사례 13)

"LICADHO(현지 인권 단체)를 만난 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에 전화하라고 해서, 프라삭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 이후로는 은행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와서 독촉하지는 않았어요." (사례 14)

가구의 월 수입도 극심하게 감소했는데, 한 가구는 이전에 3백만~4백만 리엘이던 월 수입이 50만 리엘로 줄었다. 피해자는 고무농장을 운영하였는데, 고무나무가 병들고 강풍에 쓰러져 수액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결국 채무 상환을 위해 토지 일부를 매각해야만 했다. 토지 매각으로 수입은 더 줄었고, 대부분의 수입이 대출 상환에 들어가다 보니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졌다(이상 사례 10).

"기후변화 전에는 제 농지에서 1,500만 리엘을 벌 수 있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캐슈넛 가격도 떨어지고 수확량도 크게 줄어서 300-400만 리엘밖에 벌지 못했어요. 약 10배 정도 손실이 났죠. 기후변화 전에는 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불가능해졌어요." (사례 7)

"하루 종일 고무 농장에서 일해서 우리 가족 5명이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00달러 정도예요. 이걸로 일상적인 식비와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은행 상환금도 모아야 해요.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농장에서 월 300만~400만 리엘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입이 없어요." (사례 10)

대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토지라는 핵심 생계수단의 상실, 소득의 급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자산의 손실이라는 연쇄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가구들을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 11> 자재를 마련할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된 피해자의 집 ©손고운(한겨레21)



나) 식량 안보 및 영양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구들의 식량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많은 가구가 대출 이후 식비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만 했고, 이는 식사와 질과 양의 저하로 이어졌다. 한 가구의 경우 일일 식비가 4만-5만 리엘에서 1만-2만 리엘로 줄었고, 이로 인해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 섭취가 크게 줄었다(사례 10). 한 가구는 쌀 1kg(3천 리엘)조차 구매하기 어려워 이웃이 나눠주는 쌀 1-2kg으로 죽을 쑤어 먹으며 연명하는 등(사례 9),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극심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기, 생선,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옷을 살 돈도 모을 수 있었죠. 대출 이후에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고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갈 돈을 줄 수가 없어요."(사례 6)
"쌀 1kg이 3천 리엘인데, 그걸 살 수가 없어서 죽을 쑤어 먹어요. 숲에서 구한 호박잎, 박잎을 넣고, 쌀은 조금만 넣어요. 고기는 없고, 아이들이 논에서 달팽이라도 잡아오면 그걸 죽에 넣어 먹죠. [...]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웃이 쌀을 1-2kg 주고, 음식을 나눠줘요. 쌀만 있으면 쌀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요."(사례 9)
"매일 먹는 음식이 줄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생선, 고기를 덜 먹게 되었고, 숲에 가서 채소를 구해 먹어요.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 식비가 줄었어요. 하루 식비가 4만-5만 리엘이었는데, 이제는 1만-2만 리엘로 줄었어요. 그 돈을 상환금으로 저축해야 하니까요. 음식보다는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요. 무 절임이나 오이 절임, 말린 생선처럼 값싼 음식을 찾아요. 대부분 무나 오이 절임을 먹죠." (사례 10)
"이가 아파도 치료비 7만 리엘을 쓸 수가 없어요. 쌀 한 포대가 14만 리엘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쌀을 사는 게 낫죠. [...]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비교하면, 그때는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사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때때로 밥에 값싼 라면이나 삶은 계란만 먹어요. 충분하지 않죠."(사례 14)

다) 아동 교육, 아동 노동, 이주 노동

대출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아동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많은 아동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에 내몰렸고, 대출담당직원이 직접 자녀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9). 학교가 10km나 떨어져 있어 통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사례 5), 12세 어린이가 옥수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 두고 국경지역에 위치한 온라인 사기 업체에 취업한 사례(사례 13), 16세 소녀가 카사바 자루를 나르는 중노동을 하다 병에 걸린 사례 등이 있었다(사례 9).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까지 오토바이로 가야 하는데, 기름값을 댈 수가 없어요." (사례 5)
"대출 이후에는 음식을 덜 먹게 되었고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갈 돈을 줄 수가 없어요."(사례 6)
"제 딸은 열심히 일하다가 기관지염에 걸렸어요. 제 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카사바 포대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으면 체포될 거라는 협박을 받아서, 제 딸은 엄마를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어요. [...] (딸) 저는 2020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8학년이었어요.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지금 11학년이었을 거예요. 8학년은 마쳤고, 계속 공부를 했다면 9학년이 될 예정이었어요." (사례 9)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학생의 10%만이 학교에 다녀요. 일부 5-6살 아이들은 들에서 소를 돌보고 있죠. [...] 막내가 옥수수 농장에서 일할 때가 12살이었어요. [...]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를 수확하면 하루에 13,000-15,000 리엘을 받았어요. 한 시즌에 10일 정도만 일할 수 있었죠. 제 딸도 '엄마, 저 학교 빠지고 옥수수 수확철에 10일 동안 일할 수 있어요'라고 했어요. 학교에 1-2일 빠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를 돕겠다고 했죠." (사례 13)
"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은 승려였어요. 승려 학교 9학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제 아들은 승려 학교 9학년을 마치고 저에게 '엄마, 제가 공부를 멈추고 일자리를 찾아서 은행에 갚을 돈을 구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승려가 되는 공부를 그만두고 중국의 온라인 회사에 취직해서 한 달에 300 달러를 벌었어요. 은행에 400 달러를 갚았어요." (사례 13)

대출 상황 압박으로 인한 일본, 태국 등으로의 이주노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로 인한 위험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도 대출을 받았는데, 12학년을 졸업한 자녀를 일본으로 보내야 했고 땅도 모두 팔았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은행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은행이 제 땅을 모두 가져간다면, 저도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거예요. [...] 우리 마을에는 대출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태국으로 일하러 가요." (사례 10)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태국에 가서 풀을 베는 일을 하게 된 가족이 있었어요. 기계로 풀을 베다가 돌이 튀어서 눈을 다쳐 실명했죠. 불법체류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항의했더니 눈 치료비로 10,000바트를 받았대요." (사례 13)

라) 정신건강

대출 상황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매일 밤 상황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사례 7), 과도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4). 혼자 울며 자책하고(사례 12),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사례 9). 대출 상황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사례 4).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었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졌어요. 항상 불행하게 느껴져요. [...] 어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구하는 것, 은행 빚을 갚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했고, 그 스트레스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례 4)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러다 미치게 될 것 같아요." (사례 7)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땅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살할 것 같아요. 모든 땅문서가 은행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아남기 위해, 먹고살기 위해 어떻게 땅을 되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례 9)
"때때로 울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었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폭발쳐서요. 그럴 때면 혼자 울곤 해요.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면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나이도 들고, 저를 받아주는 곳도 없었어요. 수술도 받아서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아이들에게만 의존해야 하는데, 아이들도 일자리가 없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사례 12)

9) 소결

캄보디아의 소액금융 시장은 여성, 농민, 선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소득과 제한된 상환 능력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와 기본적인 생활 개선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 부실한 상환능력평가,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 부과 및 강압적 추심 행위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인권침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토지와 주거지 상실, 식량 불안정, 자녀 교육 중단, 아동 노동, 이주 노동, 가정 폭력,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 12> 생계 유지를 위해 국수를 만드는 피해자의 모습 ©손고운(한겨레21)



다. 관련 기관 면담

1) 현지 인권 단체

네트워크는 은행 및 피해자 면담을 마친 후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의 약탈적 금융 관행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지 인권 단체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로 피해자 면담에서 제기되었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 단체에서는 2019년에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 관련 약탈적 금융과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2016년경만 해도 대출 금액이 작았고 채무자의 실제 소득에 더 비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해외 투자자들이 소액금융기관들에 투자하며 대출 규모가 점점 커졌고,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출 규모 증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토지 담보였는데, 지방당국에서 담보 설정이 가능한 토지권을 배분하기 시작한 후 토지 값이 계속 올랐고, 이러한 토지를 담보로 해당 가구의 현금흐름상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채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토지 값 하락과 더불어 기후변화도 농촌 가구의 수입과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데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어 작물 가격의 등락 폭이 높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작물이 실패하거나 외적인 시장 요인으로 인해 작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구제할 장치가 없어 가구들이 그 손실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언급한 교육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교사 급여가 적어서 오전에만 의무교육 수업을 하고 같은 교사가 오후에 돈을 받는 사교육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공식 수업료에 시골에서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비용 등이 더해지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채무 상황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⁸³

채무자가 대출금의 계약상 목적과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계약상 목적은 투자자 보고 등 소액금융기관 자신을 위한 것이며 고객은 이를 모르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는 기관 내규를 위반할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서 제재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고 했다.

83 유엔개발계획(UNDP)도 캄보디아 학교에서의 이러한 관행이 아동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Curbing Private Tutoring and Informal Fees in Cambodia's Basic Education, <https://www.undp.org/cambodia/publications/curbing-private-tutoring-and-informal-fees-cambodias-basic-education> (2015. 6. 12.).

공격적인 추심 행위로 느끼는 압박감이 선주민, 비선주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단체 측은 공동체에 따라 다르고 비선주민 역시 지역 관리의 부패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주민에 대한 공적인 차별이 많으며 크메르어를 잘 못한다면 변호사, 법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경험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선주민이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 측에서 주장한 고충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소액금융기관의 고충처리절차는 그 투자자들에게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진정 절차 역시 해외 투자자의 개입 등으로 인해 일부 사건에 대해 채무조정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채무자에 언어 폭력을 가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가했다고 전했다.

단체 측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캄보디아에서는 소액금융이 사채업을 대체하고 있지 않고 역설적으로 소액금융 업계와 사채업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소액금융이 없어지면 사채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소액금융기관들의 주장에 반하는 지점이다. 그 원인은 ‘빚 돌려막기’에 있다.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 직원들은 본인의 인센티브와 직결되는 ‘부실채권’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사채를 얻어서 임시로라도 빚을 상환하라고 강압하며 이후 그 사채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을 약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채업은 각종 수수료와 추가 대출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막대한 이자를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 사업을 하는 한국 은행들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단체 측은 우선 은행 측에서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를 통해 대출 승인 과정이나 추심 과정 등에서 은행의 귀책이 인정되면 피해자에 채무조정, 탕감, 담보 토지 반환 등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네트워크는 현지조사 전 문헌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2021-2025년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에 지역개발(농업) 분야의 실행 계획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확대 등 소농의 금융접근성 개선 및 시장 접근성 개선”⁸⁴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이 캄보디아 소액 금융 업계에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이가 캄보디아 사무소와 면담을 요청하였고, 2024년 8월 6일 농촌개발담당 신용화 부소장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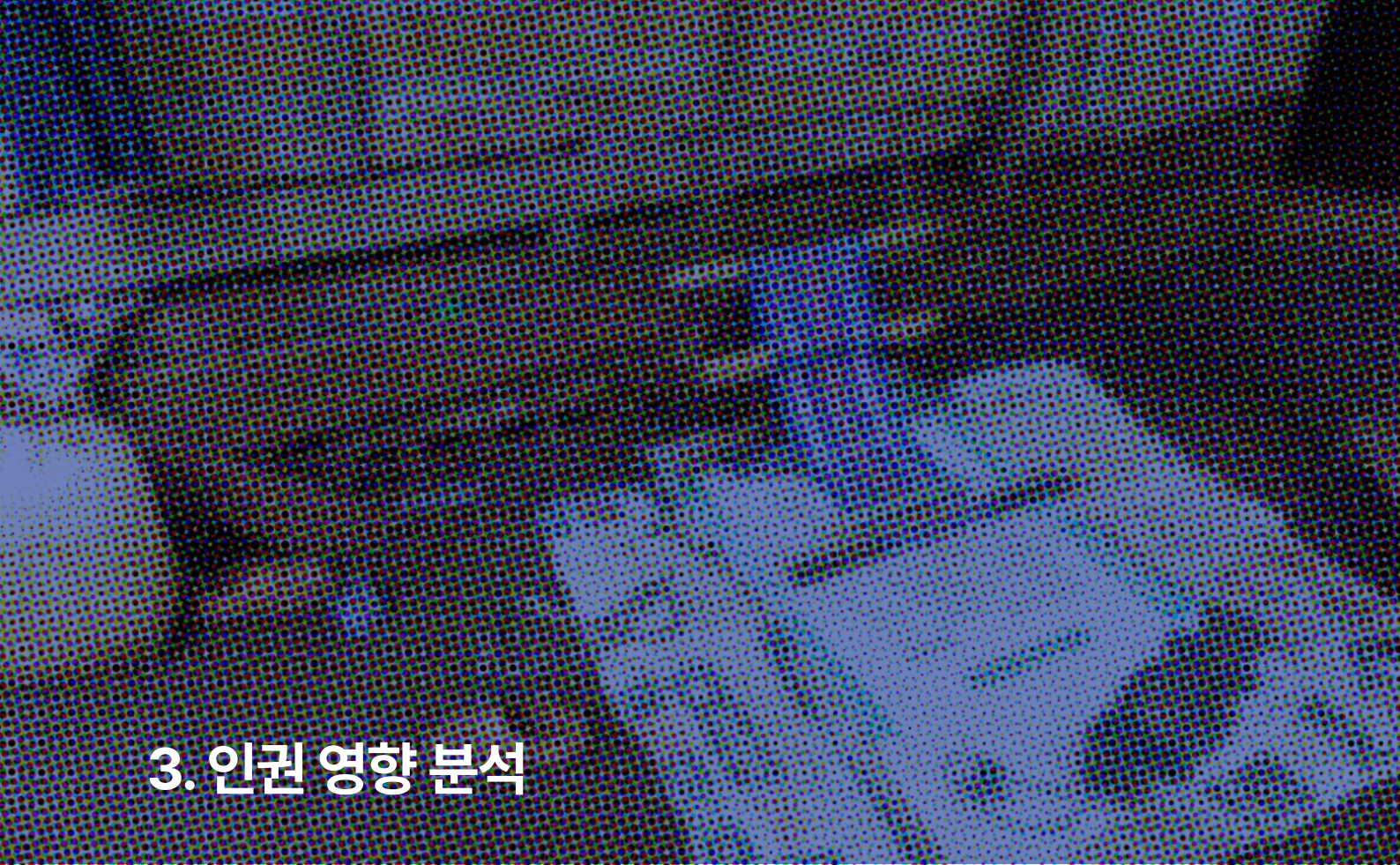
현재 캄보디아에서 KOICA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냐는 질문에 신 부소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태국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대출 관련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코이카에서 진행 중인 농촌개발 사업에서는 계좌를 사업수행기관과 공동으로 개설하게끔 메커니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약탈적 대출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계좌를 만들 때 캄보디아우리는행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와 관련하여 약탈적 금융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 부소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고 국내 기업이 인수한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은행의 현지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약탈적 금융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신 부소장은 KOICA는 은행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못박았다.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하지만, 농촌개발 사업에 은행 계좌를 이용한 것 일 뿐 은행이 개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은행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84 관계부처 합동, “캄보디아 국가 협력 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2020. 1.), https://www.koica.go.kr/sites/khm_kr/file_download/CPS_Cambodia.pdf (2025. 4. 14. 확인.).





3. 인권 영향 분석

가. 개요

본 장에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 구체적으로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을 소개하고, 이런 기준이 두 은행의 대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려면 두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은행의 대출 정책과 관행이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 소재 기업의 국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구제를 제공할 한국 정부의 국제법상 ‘인권보호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은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이 가족의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을 더욱 깊은 빈곤으로 빠져들게 하고 이들의 인권, 구체적으로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들의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의 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⁸⁵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이하 “식량권”)는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말에 ‘의식주’라는 표현이 있듯, 국제인권법에서도 식량, 의복, 주택에 대한 권리를 묶어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로 포괄한다. 이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일맥상통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5조 제1항에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캄보디아와 한국이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서도 제11조 제1항에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한다.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식량권은 인간의 생존 및 기본적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타 인권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2호에서 식량권이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여타 인권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한 바 있다.⁸⁶ 이에 덧붙여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최소한의 칼로리와 특정 영양소의 집합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85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 제1항.

86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1999):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4번 단락.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점검하는 전문가 기구(‘조약 기구’)이고 규약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담은 일반논평을 주기적으로 발행해왔다.

설명한다.⁸⁷

현지 실태조사에서 만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피해자들은 불어나는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 토지 등 생계수단 상실 등으로 인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적으로도 식비가 부족하여 하루에 한 끼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질적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심각한 경우 숲에서 채취한 잎, 논에서 잡은 달팽이 등으로 죽을 쑤어 먹는 등 가족의 최소한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식량 상태에 처해 있었다.⁸⁸ 해외 연구에서도 과다 부채의 가장 큰 피해 형태 중 하나로 “영양의 양과 질 감소”를 꼽았다.⁸⁹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캄보디아는 유엔에서 지정한 최빈국으로 빈곤율이 20%에 육박한다.⁹⁰ 캄보디아의 빈곤선은 인당 하루 10,951리엘⁹¹로 원화로 약 4,000원이다. 전체 인구의 20%가 인당 하루 4,000원 이하로 생활하는데, 소액금융이 성행하는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⁹²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빈곤선 바로 위에 있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 인구 또한 상당히 많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55.4%가 빈곤선 아래 또는 바로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⁹³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의 총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엔겔 계수)은 높아진다. 여기에 채무 상환 압박, 토지 등 생계수단 상실로 가계 소득이 추가로 감소하면 이미 부족했던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영양 부족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악화, 노동 생산성 감소, 아이들의 발육 부진 등으로 이어지고 채무 상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⁹⁴ 그렇게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다.

87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1999):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8번 단락.

88 제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7)영향 및 피해 참조.

89 Frank Bliss(주 22), 앞의 글, 81.

90 World Bank Group, Pandemic Checks Cambodia's Progress on Poverty (2022. 11. 28.),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1/28/pandemic-checks-cambodia-s-progress-on-poverty>. 2022년 기준.

91 World Bank Group, Cambodia Poverty Assessment: Toward a More Inclusive and Resilient Cambodia, <https://hdl.handle.net/10986/38344> (2022. 11.).

92 앞의 글.

93 Frank Bliss(주 22), 앞의 글, 19.

94 John Saunders, Trevor Smith, “Malnutrition: causes and consequences”, Clin Med (Lond), 10(6):624–627,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4951875/> (2010. 12.).

2)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이하 “주거권”) 역시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권은 식량권과 더불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포섭되며 위에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사회권위원회는 2023년 3월 발표한 캄보디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소액금융으로 인한 부채가 저소득 기구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부채가 이들의 사회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⁹⁵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에서 주거권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⁹⁶ 또한 주거를 “단지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거주지와 동일시 한다면가 순전히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등”으로 해석되면 안되며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⁹⁷ 위원회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란 “주거와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비용이 다른 기본적인 수요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험,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⁹⁸

현지 실태조사에서 만난 피해자 중 일부는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선주민의 경우 대나무 등 기초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전통 주택이 오랫동안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지으면 오래 살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⁹⁹ 그러나 피해자들은 결국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 건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오히려 담보로 설정된 주택과 주택의 대지를 팔아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사례 9).

두 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빈곤의 악화는 식량권뿐만 아니라 주거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 가구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기존 주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부적절한 주거 상황은 인간의 존엄을 해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9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Cambodia, E/C.12/KHM/CO/2(2023. 3. 27), 38-39번 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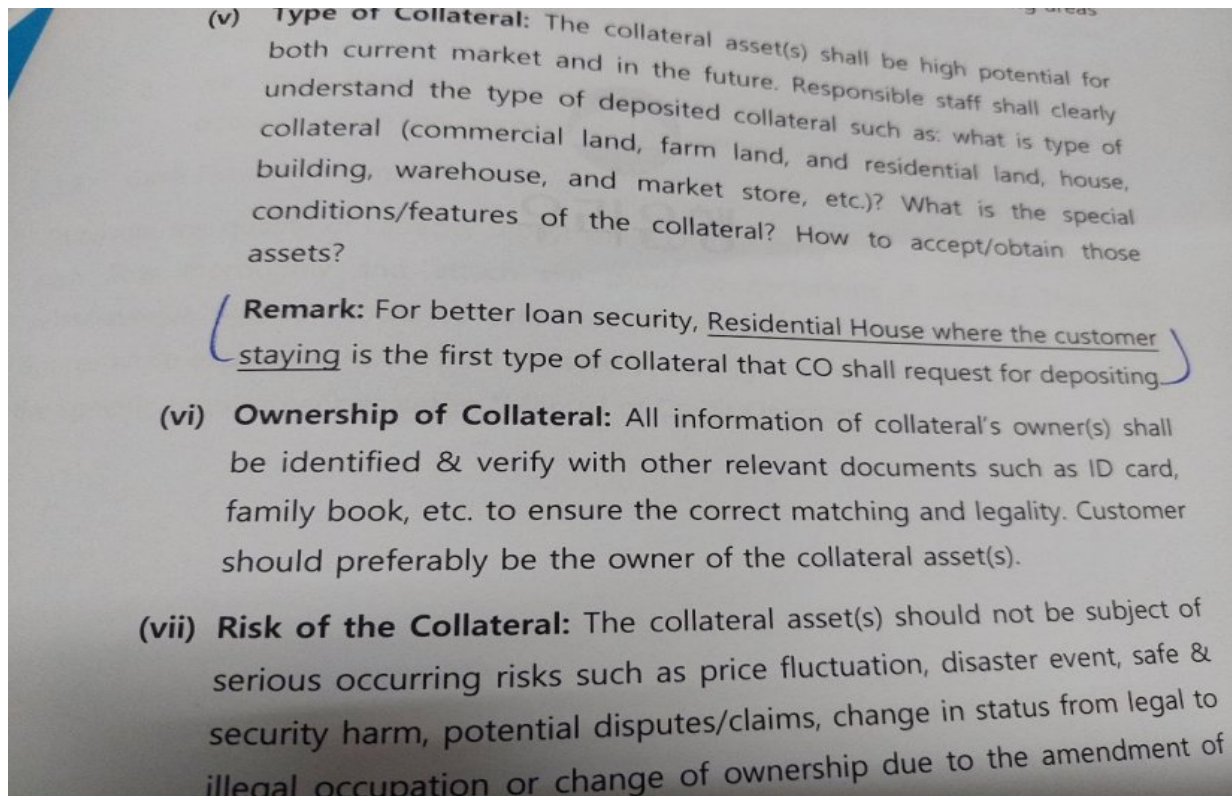
96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199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규약 제11조 제1항), 1번 단락.

97 위의 글, 7번 단락.

98 위의 글, 8번 단락.

99 위 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중 나. 피해자 면담의 (2) 대출 과정 참조.

두 은행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의 대지를 우선적으로 담보로 설정하도록 하여 대출자들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신청 및 평가 절차 지침(Loan Application and Assessment Process Guideline)’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담당직원이 예치를 요청하는 첫 번째 담보 유형은 고객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이다.”¹⁰⁰ 심지어 “고객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이라는 부분은 밑줄로 강조되어 있다.



<사진 13>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신청 및 평가 절차 지침’ 중 일부

현지 실태조사에서 만난 캄보디아우리은행 피해자 중 63세 선주민 여성은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포함된 토지권을 담보로 예치하였고, 빚을 상환하지 못하자 캄보디아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주택과 땅을 팔고 “숲에 가서 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은행 직원들은 보증인인 아들에게도 가서 토지를 팔기 위해 어머니를 집에서 강제퇴거 시킬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이상 사례 9).

100 WOORI BANK (CAMBODIA) PLC, “Loan Application and Assessment Process Guideline” (2023. 12. 20.). 원문: For better loan security, Residential House where the customer staying is the first type of collateral that CO shall request for depositing.

3) 건강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이하 “건강권”)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건강권은 위에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에서 ‘적정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와 연관되어 등장하며,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4호에서 건강권에 대해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한다.¹⁰¹ 또한 건강이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적인 결정요소들, 즉 식량과 영양, 주거,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위생” 등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한다.¹⁰²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과다한 채무에서 비롯된 일련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었다. 영양 감소로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이 악화하고 가계 소득 감소와 채무 상황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비로 아이들을 위한 쌀을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사례 14).

또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하는 위험한 노동이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의 미성년 딸은 가족의 채무 상환을 위해 학교를 그만 두고 일용직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사례 9). 채무에 시달리던 다른 마을 사람의 미성년 자녀는 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다 실명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사례 13).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만난 모든 피해자는 과다 채무와 상환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사례 4). 특히 많은 피해자들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에 가장 힘들어했다. 아이들에게 식량이나 신발 등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가족의 채무 상환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하는 상황을 부모로서 견디기 어려워했다.

불어나는 채무로 인한 압박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강압적인 추심 방식과 언행도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켰다. 하루에 수차례 직접 집으로 찾아와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동의 없이 채무자의 가족과 집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추심 방식은

101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0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12조), 1번 단락.

102 위의 글, 4번 단락.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피해하게 하였다.¹⁰³ 마을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농촌 사회에서 이러한 낙인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쳐 아이들의 교육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은행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 피해자가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캄보디아 우리은행 직원에게 자살을 암시하여도 직원은 오히려 피해자가 “죽어도 당신의 아이는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며 계속해서 압박하였다(사례 9). 이러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는 이들의 존엄성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채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4)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아동 노동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사회권규약 역시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캄보디아와 한국 모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 제1항에서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교육권과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3호에서 교육권의 필수적 요소로 “경제적 접근성”을 언급한다.¹⁰⁴ 교육의 경제적 접근성이란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노동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32조 제1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최저 고용연령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187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협약(ILO 협약 제182호)」(이하 “아동노동금지협약”)에 의하여 금지되는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는 “불법활동을 위한 아동의 사용·조달 및 제공”과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안전 및 도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작업”이 포함된다.¹⁰⁵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채무 상황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많은 피해자들은 불어나는 채무에 대한 압박과 토지 등 생계수단 상실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로 비공식 수업비, 통학비, 식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103 위의 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5) 추심 과정 참고.

104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1999):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6번 단락.

105 국제노동기구(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ILO 협약 제182호), 제3조(1999. 6. 17. 채택, 2000. 11. 19. 발효).

한 피해자는 최근 두 딸이 학교에서 중퇴했다며, 학교에 통학하기 위한 오토바이의 기름값과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사례 5). 다른 피해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액 금융기관 부채에 시달려 아이들이 대거 학교를 그만 두어 이제는 10% 정도만 학교에 남았다고 말했다. 12살 막내 아들을 포함한 본인의 자녀들도 학교를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옥수수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마을의 다른 5-6살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소를 돌본다고 말했다(이상 사례 13). 캄보디아의 노동법상 노동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15세다.¹⁰⁶

또한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아동 노동이 확인되었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빠지고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등(사례 13) 대부분의 아동 노동은 학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권 항목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노동(사례 9)과 아동노동금지협약에서 금지하는 불법활동과 관련된 노동(사례 13) 역시 확인되었다.

조사단은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학교를 그만 두고 일을 하게끔 압박한 사례도 확인하였다. 한 피해자는 KB프라삭은행 직원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지방 관청에 신고하고 경찰을 집으로 불러오겠다고 협박하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 큰 아이들이 있으니 공부를 멈추고 돈을 조금 구해오라고 하면 어떻냐”고 압박해서 결국 16살, 13살 자녀의 학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사례 13).

이러한 관행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106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Employment and Labor, <https://cdc.gov.kh/laws-and-regulations/employment-and-labor/> (2025. 3. 20. 확인).

5)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

‘선주민(indigenous people)’이란 조상 대대로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을 뜻하며,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다.¹⁰⁷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선주민은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고유의 언어와 문화, 토지와 자원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으며, 선주민은 전세계 극빈층의 약 19%를 차지하고 비선주민에 비해 기대수명이 최대 20년 낮다.¹⁰⁸

캄보디아에서 선주민은 주로 북동부 고원지대에 대대로 거주하는 약 24개의 소수민족을 지칭하며 다수민족인 크메르인과 다른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다.¹⁰⁹ 캄보디아의 선주민은 역사적으로 저개발, 공적 차별, 토지 수탈, 전통 문화를 위협하는 동화 정책 등으로 인해 최빈국인 캄보디아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 NGO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선주민이 다수인 북동부 라타나키리 주는 기대수명이 남성이 39세, 여성이 43세에 불과하다.¹¹⁰ 캄보디아 전체의 기대수명이 2016년 기준 남성 66.1세, 여성 71.6세였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나쁜 수치다.¹¹¹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선주민은 기본적 인권 향유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선주민의 구체적 권리를 확인하는 국제인권기준이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0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선주민 권리에 대한 선언」(이하 “선주민권리선언”)은 선주민의 자결권, 선주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등을 확인하며, 특히 선주민의 전통, 관습, 영적 의식, 생계 활동 등에 필수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이하 “토지권”)를 보장한다.¹¹² 선주민권리선언 제26조 제1항은 선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사용 또는 취득한 토지와 그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제8조 제2항에서 선주민의 토지, 영토 또는 자원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과거 빈곤 퇴치를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주요 수혜자였던 선주민을 대상으로도 소액금융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조사단의 은행 면담 당시 임원들은 선주민의 취약성과 선주민 토지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찾아보니 KB프라삭은행은 자사 ‘ESG 정책’에서 선주민 권리를 중요 영역으로 지정하고 선주민의 토지권을 침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사업 제외 목록(business exclusion list)’에 포함했다.¹¹³ 하지만 임원들은 이런 정책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선주민의 취약성과 선주민 토지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은 선주민의 인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비사법적으로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두 은행의 관행은 앞에서 언급한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캄보디아 토지법(2001년 개정)은 캄보디아 선주민의 토지 공동 점유, 관리, 사용 관습을 존중하여 선주민에게 공동토지권(CLT)을 부여하였다.¹¹⁴ 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주민 공동체의 부동산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은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은행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으로 인해 많은 선주민들이 공동토지의 일부를 개인 명의로 담보 예치하였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은행 직원들은 법적으로 외부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선주민 토지를 판매하도록 압박하였다. 조사단이 만난 선주민 피해자 중에도 과도한 부채와 직원들의 공격적인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토지를 판매하기로 한 피해자들이 있었다 (사례 7, 8).

농민의 생계수단인 토지의 상실로 이어지는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은 모든 농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사용하는 선주민의 토지권을 침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6) 기타 국제인권규범상 권리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위에 살펴본 권리들 외에도 다른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피해자들이 향유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은행 직원들의 동의 없는 주택 침입, 사진 촬영 등으로 사생활에 대한 권리¹¹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¹¹⁶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¹¹⁷ 개발에 대한 권리,¹¹⁸ 구제에 대한 권리¹¹⁹ 등의 향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07 World Bank Group, “Indigenous Peoples”, <https://www.worldbank.org/en/topic/indigenouspeoples> (2025. 3. 20. 확인).

108 위의 글.

109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Indigenous People in Cambodia”, <https://iwgia.org/en/cambodia.html>, (2025. 3. 20. 확인).

110 Pact, “In Cambodia, a mining company & an indigenous village are working together for better development”, <https://www.pactworld.org/features/cambodia-mining-company-indigenous-village-are-working-together-better-development> (2016. 11. 18.).

111 World Health Organization, “Cambodia: Health data overview for the Kingdom of Cambodia”, World Health Organization Data, <https://data.who.int/countries/116> (2025. 3. 13. 확인).

112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1/295 (2007. 9. 13.).

113 KB PRASAC Bank, “ESG Management”, <https://www.kbprasacbank.com.kh/en/esg-management/> (2025. 4. 20. 확인).

114 2. 나. 4) 가) ‘캄보디아 토지 소유권 제도의 특수성’ 참고.

115 세계인권선언 제12조.

116 세계인권선언 제22조.

117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1항.

118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128 (1986. 12. 4.), 제1조.

119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05. 12. 16.).

두 은행을 포함한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인권 침해는 인권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와 인권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주목하는 사안이다. 비티 문타르본(Vitit Muntarbhorn) 유엔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은 2023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액금융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토지 담보로 지난 5년간 약 167,000가구가 토지 매각을 강요당했고, 이런 막대한 토지 상실은 코로나 19 기간동안 빈곤율의 상승에 기여했다고 밝혔다.¹²⁰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23년 3월 발표한 캄보디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소액금융으로 인한 부채가 저소득 기구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부채가 이들의 사회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을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하였다.¹²¹

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규범

1) 개요

전통적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위에 열거한 피해자들의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캄보디아 정부가 진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을 ‘존중 의무’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보호 의무’를 진다. 캄보디아 정부는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을 포함한 소액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캄보디아 농촌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재를 방치한 결과 저소득 가구가 소액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여러 차례 캄보디아 정부에 관련 우려를 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¹²²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캄보디아 정부에게 있고 기업들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관련 국제 규범에 의하면 이러한 비윤리적 소액금융 사업에 가담하여 이득을 얻은 기업 역시 그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은 각자의 대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모기업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그 모기업인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본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등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노동자, 소비자, 현지 주민 등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은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최근 공급망과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이 거버넌스가 약한 국가로 외주화되어 현지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정작 이러한 구조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원청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관련 국제 규범을 발전해나가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국제적 기준으로 견고히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연성규범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실사’¹²³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작년 유럽연합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¹²⁴이 채택되는 등 점점 기업에 인권 관련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성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유엔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기업과 인권 관련 신규 국제인권조약이 성안 과정에 있다.¹²⁵

이하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국제 규범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이에 따라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 그리고 그 모기업들이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¹²³ Human rights due diligence. 그 내용은 아래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¹²⁴ European Un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Directive (EU) 2024/1760,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2025. 3. 20. 확인).

¹²⁵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BHR Treaty Process,” <https://www.ohchr.org/en/business-and-human-rights/bhr-treaty-process> (2025. 3. 20. 확인).

¹²⁰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Vitit Muntarbhorn, A/HRC/54/75 (2023. 7. 20).

¹²¹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Cambodia, E/C.12/KHM/CO/2(2023. 3. 27), 38-39번 단락.

¹²²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Cambodia, E/C.12/KHM/CO/2(2023. 3. 27), 38-39번 단락.

2)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¹²⁶은 기업과 인권 관련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다. UNGP가 제시하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4>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3대 축 (출처: Shift Project)

¹²⁶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R),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025. 4. 3. 확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하여 UNGP는 모든 기업은 ‘국제인권장전’(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등에서 보장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¹²⁷ 또한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cause)하거나 이에 기여(contribute)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 사업 관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된(directly linked)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용한 영향력(leverage)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¹²⁸

기업이 자신의 기업활동이나 사업 관계 등을 통해 연관된 잠재적 및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GP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다. 인권실사란 기업이 자신의 (또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또는 공급망, 가치사슬, 사업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잠재적 및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¹²⁹하고, 식별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 실제적 부정적 영향을 제거·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사내 제도와 정책 체계를 설립하고, 이러한 제도·체계의 운영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¹³⁰ 또한 UNGP는 인권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장벽이나 다른 잠재적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³¹

구제에 대한 접근은 UNGP의 또다른 축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의 피해자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UNGP에 따르면 실효적 구제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같이 침해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죄, 배상, 자활,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과 벌금과 같이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징계 제재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¹³² 피해자 구제를 위해 UNGP는 기업이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대상자의 접근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하고, 그 결과와 구제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³³

¹²⁷ UNGP 제12조.

¹²⁸ UNGP 제13조, 제19조.

¹²⁹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는 과정을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로 지칭하기도 한다.

¹³⁰ UNGP 제13-24조.

¹³¹ UNGP 제18조 및 그 주석.

¹³² UNGP 제25조 주석.

¹³³ UNGP 제31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관행을 계속한다면 다른 대출자의 인권 향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UNGP를 토대로 보았을 때 본 사안의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책임 있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준중책임을 다하였는지, 추가적인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인권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구제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책임 있는 기업의 범위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완화·제거·최소화할 책임은 그 모기업에도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2년 발행한 UNGP에 대한 해설서에서, 기업 집단이 자회사, 계열사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구조가 해당 집단의 본질적인 인권준중책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¹³⁴ 2024년 채택된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도 제1조 제1항에서 본 지침은 “회사 자체의 운영, 자회사의 운영 및 당해 기업의 활동사슬에 속한 협력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 및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업의 의무”와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고 명시한다.¹³⁵

KB프라삭은행은 KB국민은행이 100% 소유한 자회사이며,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이 100% 소유한 자회사이다.¹³⁶ 캄보디아우리은행 역시 우리은행이 100% 소유한 자회사이며,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100% 소유한 자회사이다.¹³⁷ 즉 UNGP에 따라 한국에 본사를 둔 KB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 역시 각자의 캄보디아 법인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완화·제거·최소화하고 그 피해자들에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134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special-issue-publications/corporate-responsibility-respect-human-rights-interpretive> (2012. 6. 1.).

135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136 KB금융그룹, “그룹사 현황 (기준일자 2024. 12. 31.)”, <https://www.kbfg.com/kor/about/network/domestic.htm> (2025. 4. 20. 확인).

137 우리금융그룹, “국내 네트워크 (2024. 8. 1. 기준)”, <https://www.woorifg.com/kor/company/introduce/summary/contentsid/32/index.do> (2025. 3. 20. 확인).

국내 네트워크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그룹 KB의 국내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기준일자 : 2024.12.31

KB국민은행 100%	
KB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100%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안마법인	100%
KB미안마은행	100%
KB프라삭은행	100%
KB Bank	
* KB 국민은행: 66.88 %, PT KB Valbury Sekuritas : 0.24%	
* PT, KB Insurance Indonesia : 0.10%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 0.29%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0.06%	
└ PT Bukopin Finance	99.24%
└ PT Bank Syariah Bukopin	95.92%
KB펀드파트너스	100%

<사진 15> KB금융그룹의 자회사 네트워크 (출처: KB금융그룹 누리집)

UNGP에 따르면 두 은행의 모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가치사슬, 사업 관계 등을 통해 두 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 OHCHR에 따르면 ‘가용한 영향력’이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주체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¹³⁸

본 사안의 경우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사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이나 두 은행과 그 모기업의 주주, 투자자 등 가치사슬과 사업 관계를 통해 두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KB프라삭은행 누리집에 따르면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홍콩 지점, KEB하나 글로벌 재무유한공사 등도 신디케이트 론 형태로 KB프라삭은행 사업에 자금

138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special-issue-publications/corporate-responsibility-respect-human-rights-interpretive> (2012. 6. 1.), 48.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⁹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에 나열한 금융기관은 KB프라삭은행에 제공한 자금이 약탈적 대출에 활용되거나 그러한 관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두 금융그룹의 자회사의 인권 침해적 사업 관행을 개선하도록 그 경영진에 설명을 요구하는 등 가용한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 위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기본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¹⁴⁰ 그 사업이 최빈국의 저소득 농민, 여성, 선주민 등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한다. 특히 수년간 현지 시민단체, 외신, 해외 연구진, 그리고 유엔인권기구와 전문가까지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현지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다수의 피해자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¹⁴¹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권존중책임의 기본이다.

그러나 조사단이 만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대출 관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러한 외부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⁴² 그 근거로 은행들의 연합체인 ‘캄보디아 은행 협회’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사단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측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제거·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관련 정책이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UNGP에 따르면 인권실사의 첫 단계는 잠재적 및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다.¹⁴³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인권실사의 토대는 무너진다.

UNGP에서 강조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은행 직원을 통해 채무조정 등 구제를 요청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캄보디아중앙은행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출하면 오히려 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였다.¹⁴⁴ 또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지 인권단체와 소통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KB프라삭은행 경영진은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오히려 해당 인권단체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폄하하기도 했다. 조사단이 만난 해당 인권단체 담당자는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한번도 이들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두 은행의 모기업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을 위반하였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프라삭과 비전펀드 캄보디아/WB Finance Co. Ltd.를 인수합병할 당시 이미 각 MFI의 약탈적 금융 관행과 인권 침해에 대한 현지 인권단체 보고서와 외신 보도가 있었다.¹⁴⁵ 이러한 보도가 없었더라도 인수 대상 기업이 최빈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권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계속된 인권 침해 관련 보도에도 해당 MFI의 지분을 계속 늘려 완전히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서도, 기존에 지적받았던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현지 실태조사 전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번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소통 요청도 거부하였다.

이렇게 부정적 인권 영향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마저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의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위반이라고 하겠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 모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다)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그리고 그 모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존중책임을 다하려면 즉시 캄보디아에서 두 은행의 대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UNGP 등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철저한 인권실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39 KB PRASAC Bank, Funding Partner & Member, <https://www.kbprasacbank.com.kh/en/bank-overview/funding-partner-member/> (2024. 12. 31.확인).

140 UNGP 제17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에 대한 실사를 실행해야 한다.”

141 제1장 배경, 다.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참고.

142 제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가. 은행 캄보디아 법인 면담 참고.

143 UNGP 제18조 주석.

144 위 제2장의 다. 관련 기관 면담 참조.

145 Shaun Turton and Bopha Phorn, Cambodia's "reckless" microfinance industry puts economy at risk,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Business-trends/Cambodia-s-reckless-microfinance-industry-puts-economy-at-risk> (2019. 8. 6.).

우선 대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은행 자체적으로 또는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UNGP의 원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¹⁴⁶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¹⁴⁷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방지·완화·제거·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¹⁴⁸ 이러한 조치로는 문제가 되는 두 은행의 대출, 추심, 담보 관련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실효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환류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¹⁴⁹ 그리고 조치 계획, 과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은행과 그 모기업들은 대출 관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효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UNGP에 따르면 ‘구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원상복구,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다. 두 은행은 최소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은행의 귀책 수준에 따라 이자, 연체이자 및 행정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채무 조정 또는 탕감, 담보 토지 및 주택 반환 등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덧붙여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두 은행과 그 모기업의 투자사, 협력사 등도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적 인권 영향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용한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은행에게 본 사안에 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것부터, 독립적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거나 사업 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¹⁵⁰

146 UNGP 제18조.

147 UNGP 제21조.

148 UNGP 제19조.

149 UNGP 제20조.

150 UNGP 제19조.

3) 유엔 책임은행원칙(UN PRB)

UNGP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처럼 모든 분야의 기업에 적용되는 인권준중책임과 책임경영에 대한 국제기준도 있지만, 각 산업 분야별 기준도 발전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 그 구조와 사업 방식, 주요 인권 리스크 등에 따라 인권준중책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유엔 책임은행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이하 “PRB”)는 은행의 책임경영 관련 국제기준이다. PRB는 2019년 유엔총회에서 유엔환경계획의 주도로 출범했으며, 은행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과 파리 협정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6대 원칙과 그 세부원칙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¹⁵¹



<사진 16> 유엔 책임은행원칙 로고 (출처: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151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Shaping the future of banking”, <https://www.unepfi.org/banking/bankingprinciples/> (2025. 3. 20. 확인).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현재 PRB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2019년 9월, 우리금융그룹은 2020년 1월 각각 PRB에 가입하였고 매년 PRB 원칙의 이행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¹⁵²

서명 기관은 PRB의 6대 원칙에 따라 (1) SDGs 등 개인과 사회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경영 전략을 조정하고, (2) 자신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증가, 부정적 영향을 감소, 그리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3) 책임감 있게 고객과 협력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행을 독려하고, (4) 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협의, 교류, 협력하고, (5) 책임 있는 은행 경영 거버넌스와 문화를 통해 본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6) 정기적으로 본 원칙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¹⁵³

그러나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대출 관행은 PRB에 따른 은행의 책임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PRB 참여를 통해 은행들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실현하고자 하는 SDGs를 살펴보면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등 총 16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¹⁵⁴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빈곤이 심화하고, 식량 안보가 악화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¹⁵⁵

또한 서명 기관은 제2원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그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은행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자체를 부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제3원칙에 따라 고객과 책임 있게 협력하여 미래 세대의 공영을 증진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피해자들을 경제적 파멸로 이끌고 스스로도 부실채권의 위험을 누적시키며 공영 대신 공멸의 길을 택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원칙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교류와 협력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유엔환경계획에 제출한 PRB 원칙 이행상황 관련 보고서에 모든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우리금융그룹은 2023년 보고서에서 주요 경영 이슈 중 하나로 ‘인권’을 선정하였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항목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 지표를

부여했다.¹⁵⁶ KB금융그룹 역시 2023년 보고서에서 KB미소금융재단 사업을 소개하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PRB 원칙에 따라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¹⁵⁷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PRB 서명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면 즉시 캄보디아 자회사의 대출 관행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통한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실효적 구제를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Cerise+SPTF 고객보호기준(Client Protection Standards)

민간 분야에서도 산업별 인권준중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 ESG¹⁵⁸ 경영에 관한 포괄적 국제 기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비영리단체 Cerise+SPTF에서 전세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한 ‘사회 및 환경 책임 경영에 관한 보편적 기준(Universal Standards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이하 “SEPM”)’은 금융기관의 사회 및 환경 책임 경영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다.¹⁵⁹ SEPM은 “고객 보호(client protection)”를 7대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원칙과 지표를 설정한 ‘고객보호기준(Client Protection Standards, 이하 “CPS”)’을 포괄한다.

PRB가 은행들이 SDGs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과 틀을 제공한다면, CPS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금융 소비자’를 포함한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들을 제시한다. 특히 대출의 영업, 승인, 추심, 담보 설정, 가격 책정 등 책임 있는 대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두 은행의 세부적인 대출 관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CPS는 총 8대 원칙과 그 세부원칙 및 지표로 구성되며, 8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상품, 서비스, 채널은 고객을 이롭게 한다, (2) 기관은 고객에게 과도한 부채를 지우지 않는다, (3) 기관은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기관은 책임 있는 가격을 책정한다, (5) 기관은 고객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 (6) 기관은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정보권리에 대해 알린다, (7) 기관은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한다, (8) 기관의 거버넌스와 경영진

156 Woori Financial Group, “Reporting and Self-Assessment Template”, <https://www.woorifg.com/common/file/2023%20PRB%20Reporting%20and%20Self%20Assessment%20WFG.pdf> (2023. 8.), 11.

157 KB Financial Group,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2023 Self-Assessment Report”, https://www.kbfg.com/common/jsp/fileDownUtil.jsp?filepath=/data/esg/initiative/KBFG_PRB.pdf (2023. 8.), 20.

158 ‘ESG’란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요소를 뜻한다.

159 Cerise+SPTF, Universal Standards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https://cerise-sptf.org/download-the-manual/> (2022. 2.).

152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Signatories”, <https://www.unepfi.org/banking/prbsignatories/> (2025. 3. 20. 확인).

153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About the Principles”, <https://www.unepfi.org/banking/more-about-the-principles/> (2025. 3. 20. 확인).

154 UNDP 서울정책센터,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25. 3. 20. 확인).

155 위 제3장 분석의 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참고.

은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부 감사 및 인사 시스템은 이를 지원한다.¹⁶⁰



<사진 17> Cerise+SPTF 고객보호기준(CPS) 8대 원칙 (출처: Cerise+SPTF)

조사단은 귀국 후인 2024년 8월 23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금융기관들의 SEPM과 CPS의 이행을 지원하는 Cerise+SPTF 담당자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여 CPS와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후 서면 질의서를 통해 두 은행의 구체적 관행에 대한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은행과 본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서를 참고하여 두 은행의 대출 관행이 CPS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가) 과도한 부채

CPS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채를 지우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실제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한다.¹⁶¹ 그 구체적 지표로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은 대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필수 지출, 기존 부채 상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¹⁶² 또한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대출신청자 가족의 포괄적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하며,¹⁶³ 보증, 담보 등을 상환 능력의 평가 기준이나 대출 승인의 주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¹⁶⁴

면담 시 두 은행 모두 관련 내규, 지침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환의지 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KB프라삭은행 대출규정은 “3Rs” 원칙(Repayment willingness-상환의지, Repayment capacity-상환능력, Repayment security-상환담보) 하에 대출 심사에 있어 신청자의 배경, 과거 기록, 상환 능력, 담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¹⁶⁵ 캄보디아우리은행 대출 신청 및 심사 절차 가이드라인은 5C(Character-성격, Capacity-상환능력, Capital-자본, Collateral-담보, Condition-조건)와 4R(Right Time-적절한 시기, Right Amount-적절한 금액, Right Business-적합한 사업, Right Person-적절한 대상) 원칙 하에 가족 및 사업 관련 상태, 현금흐름, 담보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⁶

그러나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대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환능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담보 가치를 제외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가처분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는 과도한 부채로 이어졌다. 조사단이 만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기존 부채가 있었음에도 토지권을 담보로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추가 대출을 신청했고 두 은행은 이를 승인하였다(사례 1, 2, 5, 10, 11, 14). 한 선주민 피해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빈곤층으로 인정한 ID Poor 대상자로서 가계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우리은행으로부터 무려 10,000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사례 9). 해외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은행 측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를 다수 확인하였다.¹⁶⁷

이처럼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빈곤, 기존 부채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에도 대규모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는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가치를 대출 승인의 주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

¹⁶¹ 위의 글, CP 2.

¹⁶² 위의 글, CP 2.1.1.1.

¹⁶³ 위의 글, CP 2.1.2.1.

¹⁶⁴ 위의 글, CP 2.1.2.2.

¹⁶⁵ KB PRASAC Bank, “Credit Policy”, KB PRASAC Bank, (2024. 1), 18.

¹⁶⁶ WOORI BANK (CAMBODIA) PLC., “Loan Application and Assessment Process Guideline”, WOORI BANK (CAMBODIA) PLC., (2023. 12. 22.), 8-12.

¹⁶⁷ Frank Bliss(주 22), 앞의 글, 89.

¹⁶⁰ Cerise+SPTF, Annex: Client Protection Standards, <https://cerise-sptf.org/about-client-protection/#downloadmanual> (2022. 2.), 2.

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CPS 기준에 명백히 반하며, 고객에게 과도한 부채를 지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 공격적 영업 및 불충분한 대출조건 설명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승인뿐만 아니라 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들의 공격적 영업 방식과 불충분한 대출조건 설명은 피해자들의 금융 문해력 부족을 이용하여 과도한 부채를 조장하였다. CPS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이자율, 각종 수수료, 담보 처리 등 상품의 조건과 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¹⁶⁸ 또한 대출약정서가 주요 현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¹⁶⁹ 기관의 소통이 현지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며,¹⁷⁰ 마케팅 자료가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¹⁷¹

그러나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수준과 금융 문해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싼 이자율에 돈을 쉽게 빌려주겠다고 홍보하고,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율, 미상환시 담보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특히 크메르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선주민에게 크메르어로 된 계약서를 주고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조사단과 면담 시에도 대출 조건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선주민 피해자들이 있었다.¹⁷²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캄보디아의 금융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82% 수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무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없다.¹⁷³ 조사단이 만난 한 선주민 피해자는 아직도 ‘이자’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사례 3). 은행 직원 이 매달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는 총 금액을 알려주면 그 산정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상환해 온 것이다. 두 은행의 직원들은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영업 과정과 계약서에 이자율을 ‘연 18%’ 대신 ‘매달 1.5%’로 설명하여 이자율이 낮아보이게끔 하고, 전체 대출 금액의 1-2%로 책정되는 행정수수료와 기타 일회성 수수료 등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게 하였다.

다) 강압적 추심

CPS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을 존중하여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추심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¹⁷⁴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직원들이 고객에게 욕설 사용, 물리력 사용, 신체적 자유 제한, 성희롱, 소리 지르기,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기, 공개적으로 모욕감 주기, 협박 등 일체의 강압 행위를 하지 말게 하여야 한다.¹⁷⁵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 직원의 추심 과정에서 CPS에서 금지된 강압 행위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고객에 대한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¹⁷⁶ 두 은행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길게는 2-3시간 동안 머물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동의 없이 가족과 집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는 등 근거없는 협박을 가했다. 특히 자주 활용한 방식은 피해자의 가족, 이웃, 가게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공개적으로 모욕감 주기였다. 이는 평판을 중시하는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Cerise+SPTF 담당자는 “이러한 모든 관행은 CPS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CPS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 당국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추심 방식에 대해서는 CPS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나 출처의 압력도 CPS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 직원의 인센티브 구조

대출담당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 역시 CPS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영업 및 추심 행위를 조장했다. CPS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일선 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공격적 영업 행위를 독려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일선 직원의 고정급여가 전체 급여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¹⁷⁷ 즉, 인센티브가 전체 급여의 50%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B프라삭은행과의 면담에 따르면 대출담당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월 250달러에 추심하는 금액의 15%가 인센티브로 누적되어 최대 10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 포트폴리오의 부실채권 비율이 3%가 넘어가면 인센티브가 제로가 된다.¹⁷⁸ 즉, 인센티브가 전체 급여의 최대 75%에 해당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3%가 넘으면 인센티브를 아예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도록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168 CPS, CP 3.1.

169 위의 글, CP 3.1.3.

170 위의 글, CP 3.1.4.3.

171 위의 글, CP 3.1.4.4.

172 위 제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2) 대출 과정 참고.

173 Leora Klapper(주33), 앞의 글.

174 CPS, CP 5.3, 5.4.

175 위의 글, CP 5.2.2.

176 위 제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5) 추심 과정 참고.

177 CPS, CP 5.3.2.1.

178 위 제2장 현지 실태조사 결과 가. 은행 면담 7)대출담당직원의 급여 구조 및 교육 참고.

Cerise+SPTF 담당자에 따르면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부적절하며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구조는 실제로 공격적 영업 및 추심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마) 과도한 이자율 및 수수료

CPS의 제4원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책임 있는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¹⁷⁹ 여기서 ‘가격’이란 이자율, 수수료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뜻한다. 세부 원칙과 지표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공정한 가격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고객에게 비용을 불필요하게 전가해서는 안된다.¹⁸⁰ 또한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이하 “ROA”)이 적절한 실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¹⁸¹

현지 실태조사 결과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15~18% 수준의 높은 이자율에 총 대출금액의 1~2%에 달하는 행정 수수료, 연체 이자, 은행 직원이 요구하는 각종 일회성 수수료 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환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선 직원의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공격적인 추심 방식을 통해 대금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캄보디아 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 모두 대출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표 2>KB프라삭은행의 최근 수익률

	2020	2021	2022	2023
총자산수익률(ROA)	3.24%	3.92%	3.98%	1.66%
자기자본이익률(ROE)	23.43%	26.07%	23.70%	9.10%
당기순이익	108,828,987달러	155,500,964달러	181,275,345달러	86,920,584달러

<표 3>캄보디아 우리는행의 최근 수익률

	2020	2021	2022	2023
총자산수익률(ROA)	0.42%	0.66%	0.70%	1.09%
자기자본이익률(ROE)	5.87%	10.58%	11.54%	4.80%
당기순이익			45,729,367달러	15,872,486달러

179 CPS, CP 4.

180 CPS, CP 4.1, 4.2, 4.3.

181 CPS CP 4.3.3.

특히 KB프라삭은행은 최근 몇년간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프라삭 인수를 시작한 2020년 이후 3년간 3%대의 육박하는 ROA와 20%가 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하였다.¹⁸² 이를 한국 국내 은행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은행의 ROA는 0.1%-0.6% 수준으로 0.4-0.5%가 평균이다.¹⁸³ 또한 국내 은행의 지난 10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5.2%에 불과하다.¹⁸⁴

또한 KB프라삭은행은 프라삭을 완전 인수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 평균 141,232,298 달러, 한화로 연 평균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최빈국에서 농민, 여성,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벌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이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KB프라삭은행의 임원진은 불과 3년만에 KB국민은행이 프라삭 인수에 투자한 1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이미 회수했다고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설명했다.

두 은행의 2023년 총 이자 수입을 총 대출자 수로 나누어 대출자 1인당 두 은행이 벌어들인 평균 이자 수입을 계산해보면 KB프라삭은행은 약 1,216달러, 캄보디아우리는행은 약 1,020달러이다.¹⁸⁵ 캄보디아의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인 1,810달러와 비교하면 두 은행의 평균적인 채무자는 연소득의 60~70%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비용으로만 지출하고 있는 꼴이다. 대부분 채무자들의 소득으로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토지, 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거나 사채 등 다른 빚을 끌어서 갚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는행 이자 수입(2023년)

	KB프라삭은행	캄보디아우리는행
총 대출자 수(number of active borrowers)	548,810명	176,130명
총 이자 수입(interest income)	667,712,623달러	179,685,683달러
대출자 당 평균 이자 수입	1,216.66달러	1,020.18달러
2023년 캄보디아 1인당 국민총소득 ¹⁸⁶ 대비	76.52%	64.16%

182 KB PRASAC Bank, “Annual Report 2023”, KB PRASAC Bank (2024).

183 지표누리 e-나라지표, 은행 총자산이익률(ROA),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3 (2025. 3. 20. 확인).

184 오온선, “[혁신없는 은행]⑥ ㉞은행, 수익성 국내은행 2배 비결은... “자산관리 수수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2/18/Y4UTQNST7FDQHB7QJSNDXOTSGM/> (2024. 12. 18.).

185 KB프라삭은행 및 캄보디아우리는행 2023년 연간보고서 통계 발췌.

186 Asia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Databas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tlas Method”, https://kidb.adb.org/explore?filter%5Bindicator_id%5D=2200006&filter%5Beconomy_code%5D=CAM&filter%5Byear%5D=2023&grouping=indicators&showRegions=false (2025. 3. 20. 확인). 연 1,810달러.

그러나 두 은행, 특히 KB프라삭은행은 이러한 높은 수익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고수하고, 피해자들의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공격적인 추심 정책을 지속하였다. 이는 CPS에 따른 책임 있는 가격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약탈적 담보 정책

CPS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상품과 서비스는 고객에게 피해(harm)를 끼쳐서는 안되며, 기관의 담보 및 보증 정책이 고객의 ‘심각한 어려움(severe hardship)’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¹⁸⁷ 특히 CPS는 담보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자산의 상실이 고객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거나 고객의 소득 창출 능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런 자산은 담보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금융기관은 이런 담보설정 불가 자산의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¹⁸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주고객층은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농민, 특히 여성이다.¹⁸⁹ 토지는 이들의 주요 자산이자 생계 수단으로 토지의 상실은 농민의 소득 창출 능력의 상실과 심각한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빈곤 퇴치라는 본래 취지로 운영되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은 토지 담보 대신 연대 보증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은 담보의 상실이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거의 모든 대출에 토지 또는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두 은행은 대출 상환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고객 입장에서 절대 잃어서는 안되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신청 및 평가 절차 지침’은 “담보력 강화”를 위해 “고객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을 우선적으로 담보로 설정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¹⁹⁰ 이처럼 두 은행은 상실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담보로 설정하도록 하여 빚 상환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두 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담보를 스스로 매각해서라도 빚을 갚도록 강압했다.¹⁹¹ 담보의 상실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남은 빚을 상환하기 위한 소득 창출 능력마저 저해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직원들의 담보 매각 강요는 계속되었다. 일선 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의 인센티브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통해 담보의 공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혈값이라도 매각해서 빚을 갚도록 종용하였다. 은행 측은 금융문해력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직원들은 스스로 담보를 팔지 않으면 은행이 언제든지 더 혈값에 팔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였다. 이로 인한 담보 상실은 피해자 가족의 생계 수단과 소득 창출 능력 상실로 이어졌고 이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CPS에서 규정하는 고객보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부분 외에도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CPS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객보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제1원칙, 즉 금융기관의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¹⁹² 고충처리제도 역시 제7원칙에 따른 ‘쉽게 접근 가능하며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¹⁹³

Cerise-SPTF 담당자에 따르면 프라삭, 비전펀드는 과거에 금융기관의 고객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한국 은행의 인수 이후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은행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워크숍 1회를 제외하면 인수 후 Cerise-SPTF의 금융기관 고객보호 역량 강화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187 CPS, CP 1.4.2.

188 CPS, CP 1.4.2.1.

189 위 2.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1) 채무자는 누구인가? 참고.

190 캄보디아우리은행, Loan Application and Assessment Process Guideline (2023. 12. 20.).

191 위 2. 현지 실태조사 결과 나. 피해자 면담 5) 추심 과정 참고.

192 CPS, CP 1.

193 CPS, CP 7.1.

5) 모기업의 인권 정책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의 대출 관행은 두 은행의 모기업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스스로 천명한 인권 정책에도 반한다.

KB금융그룹은 ‘인권정책’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UNGP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밝힌 바 있다.¹⁹⁴ 또한 KB국민은행은 ‘윤리강령’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으며,¹⁹⁵ 적도원칙에도 가입하여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¹⁹⁶

우리금융그룹 역시 ‘인권원칙’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UNGP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함을 밝힌 바 있다.¹⁹⁷ 또한 우리은행은 「인권경영 방침」을 통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하며, 은행의 운영,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 연계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¹⁹⁸



<사진 18> 우리금융그룹 인권원칙 (출처: 우리금융그룹 누리집)

194 KB Financial Group, “KB Financial Group Human Rights Policy”, <https://www.kbfg.com/eng/esg/strategy/policy/environment/list.jsp> (2025. 3. 20. 확인).

195 KB국민은행, “윤리강령”,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17601> (2025. 3. 20. 확인).

196 ‘적도원칙’이란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Equator Principles, “About the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about-the-equator-principles/> (2025. 3. 20. 확인).

197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인권원칙”,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PCT0056> (2025. 3. 20. 확인).

198 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권경영 방침”,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BKI0037> (2025. 3. 20. 확인).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토지 등 생계수단 상실은 피해자의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두 은행과 그들의 모기업은 수년간의 현지 인권단체, 해외 연구진, 외신 등이 축적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 자체를 부인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마저 거부하여 UNGP를 비롯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관련 국제기준을 위반하였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자신의 인권 정책, 인권 원칙, 윤리 강령에 따라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관행에 따른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의무

1)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의무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의 모기업(KB국민은행,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의 소재 국가인 대한민국 역시 관할권 내 기업의 해외 사업이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앞서 언급한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8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였고, 당사국으로서 각 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¹⁹⁹ 여기서 ‘존중 의무’란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로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뜻하며, ‘보호 의무’란 기업을 포함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뜻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상 의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영토와 관할권, 그리고 역외 중 국가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는 대상에 적용된다.²⁰⁰

물론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는행은 캄보디아 소재 법인이고 두 은행의 대출 관행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두 은행의 모기업이 한국에 소재하고 한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해외 사업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4호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 소재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소재국의 규약상 의무를

199 외교부, “국제인권규범”,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2025. 3. 20. 확인).

200 신윤진,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관할’의 의미와 초국경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연구 제4권 제1호 (2021), 101-176.

경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호의 역외 의무는 당사국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 외 지역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규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²⁰¹ 이에 따라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기업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혐의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당사국의 사법 및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²⁰²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조

“보호의 역외 의무는 당사국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 외 지역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규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상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국제인권법상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방안은 UNGP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UNGP 역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그 3대 축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법률, 규제, 판결을 통하여 예방, 조사, 처벌, 시정을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²⁰³

구체적으로 국가는 인권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업에게 인권 존중을 요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목표를 두는 법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함을 개선”하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에게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²⁰⁴ 또한 “피해자들이 사법상, 행정상, 입법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

201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2017):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국가의무, 26, 30번 단락.

20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2017. 10. 19), para.

203 UNGP 제1조.

204 UNGP 제3조.

치”를 취해야 한다.²⁰⁵

UNGP 제1조 주석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행동의 기준이다. 따라서 민간 주체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그 자체로 국가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런 침해를 예방, 조사, 처벌,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를 통한 해외 인권 침해 정황에 대해 적절한 “조사, 처벌, 시정” 조치를 취할 “국제인권법적 의무”가 있다.²⁰⁶ 나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채택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부여된다.²⁰⁷ UNGP에 따르면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활동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는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²⁰⁸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동시에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최대주주이다.²⁰⁹ 국민연금공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인권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다면, 적어도 두 기업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책임이 있다.

205 UNGP 제25조.

206 UNGP 제1조 주석.

207 UNGP 제4조.

208 UNGP 제4조 주석.

209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우리사주 제외 최대주주이다.

마. 소결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의 대출 관행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더욱 깊은 빈곤으로 빠져들게 하고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은행의 이러한 대출 관행은 UNGP를 비롯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관련 국제기준과 UN PRB, CPS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국제기준 역시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은 두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에 소재한 모기업인 KB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에게도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은 (1)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인권영향평가의 결과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정적 인권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방지·완화·제거·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3)피해자들에게 실효적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법에 따라 관할권 내 기업인 KB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의 해외 사업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사, 처벌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4. 권고사항

1) KB국민은행(KB금융그룹)과 우리은행(우리금융그룹)

-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사업에 대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인권실사는 다음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사업에 따른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 조사 기구 마련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제거,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 이미 발생한 부정적 인권 영향의 피해자에 대해 실효적 구제 제공
 - 인권실사의 모든 단계에서 현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 보장
 - 인권실사에 대한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
- 다른 해외 법인에도 유사한 사업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 자사의 인권경영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해외 사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 모든 임직원, 특히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자사의 인권 원칙과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본 사안에 대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 · 협력해야 한다.

2) KB프라삭은행과 캄보디아우리은행

- 대출 상품 영업 시 금융문해력이 낮은 고객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자', '담보' 등 기본적인 금융 개념
 - 이자율과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액수
 - 상환금 연체 또는 미납에 따른 결과
 - 디폴트 시 담보 처리 절차
 - 고충처리 절차 및 접근 방법
- 은행 정책이 일선 직원의 공격적 영업과 추심을 유도하지 않도록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일선 직원의 인센티브를 총 급여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급여 구조가 공격적 영업과 추심을 유도하지 않도록 개선
 - 직원의 공격적 영업 및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 협박, 모욕, 비사법적 토지 매각 강요 등 비윤리적 영업 및 추심 행위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적절한 조치

- 고객이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흐름과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 및 관행 개선
 -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금액이 대출자의 실질적 가처분 소득(필수 지출, 기존 부채 상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대출 심사 기준 개정
 - 특히 캄보디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빈곤층(ID Poor)이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대출 권유 또는 승인 금지
 -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사채로 빚을 돌려막을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금지

● 담보 상실이 고객의 생계 위기, 소득 창출 능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고객의 자산 중 상실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소득 창출 능력을 저하할 수 있는 자산은 담보로 설정 금지
- 담보 설정 불가 자산 기준 및 목록 마련
- 직원의 비사법적 담보 매각 강요 금지
-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보권 행사 절차 및 권리 안내

● 책임 있는 가격 정책을 위해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매년 총 대출금액의 1-2%에 달하는 행정수수료, 각종 일회성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삭감
-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가격(이자율 등) 설정

● 자체 고충처리제도가 모든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실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모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안내
-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 거주하거나 크메르어를 하지 못하는 고객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문성, 독립성,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제도 운영 및 진정 처리
- 고충처리제도 이용 고객에 대한 보복 금지 및 처벌

●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구제 방식은 피해자의 상황과 은행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구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문제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 앞에서 지적인 비윤리적 대출 및 추심 관행 즉각 중지

- 피해자의 실질적 상환 능력을 고려한 실효적인 채무 조정(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 행정수수료 면제 등)
- 적법한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의 강압으로 인해 부당하게 상실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피해보상
- 은행 측 잘못이 중대하거나 토지 상실,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소득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빚 일부 또는 전부 탕감

● 현재 진행중인 세계은행그룹의 준법감시인/옴부즈만 사무소 조사를 포함하여 본 사안 관련 조사 및 인권실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본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 · 협력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금융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 정부 차원에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의 캄보디아 자회사의 해외 인권 침해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본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 · 협력해야 한다.

4) 국민연금공단 및 기타 투자·협력사

● 본 사안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측에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 이에 연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관계 중단, 투자 철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자사의 인권경영체계와 책임투자원칙 등을 점검하고 인권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 본 사안에 대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소통 · 협력해야 한다.

부록: 피해자 면담 사례 요약

[사례 1]

피해자는 40대 남성 선주민으로,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며 농사일과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피해자는 2019년 프라삭(현 KB프라삭은행)으로부터 6,000만 리엘을 대출 받으면서 공동토지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출담당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하였고, 은행은 먼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토지를 팔아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여전히 대출금은 남아있다. 피해자는 대출담당 직원이 자신을 해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다.

[사례 2]

피해자는 30대 남성 선주민으로, 2020년 캄보디아우리은행에서 2,000만 리엘을 대출 받으면서 공용 토지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한 경제 사정 악화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출담당직원의 대출금 상환 압박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은행측 변호사는 그에게 공동토지권이라도 법원에서 토지를 경계 구분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변호사는 한달동안 여러 번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법원에 소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제적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 3]

피해자는 40대 남성 선주민으로, 농사일을 하며 아내와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는 KB프라삭은행에서 10,000 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원금, 이자 및 담보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 지출, 농장의 수익 감소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자신 소유 캐슈넛 농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17세 아들도 방과후 농사를 돕고 있으나, 예상보다 적은 수익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진 19> 캄보디아우리은행 광고판 ©손고운(한겨레21)

[사례 4]

피해자는 50대 남성 선주민으로, 아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는 농사일을 하며 지역사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자는 2011년경 AMK은행에서 농업 자재 구매를 위해 소액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경제 상황 악화와 가족의 건강 문제로 비전펀드캄보디아(현 캄보디아우리은행)를 비롯한 여러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출 금액이 늘어났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출, 토질 악화와 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출담당직원은 농기계나 집안의 물건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했다. 피해자는 최근 며칠 동안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대출금을 상환할지, 가족과 공동체에 관한 걱정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사례 5]

피해자들은 30대 선주민 부부로,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프라삭(현 KB프라삭은행)에서 2018년에 3,000 달러, 2022년에 5,000 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장인어른의 자살로 인한 장례식 비용 사용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대출금 상황이 어려워졌고,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2022년에는 KB프라삭은행에서 8,000 달러라는 큰 금액을 대출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했으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대출담당직원은 집이나 농장에 찾아와 오토바이나 물건들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들을 압박하였고, 돈을 갚지 않으면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자들은 농사 외에도 숲에서 열매를 주워다 팔거나 고무농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으며, 두 자녀까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돕고 있다.

[사례 6]

피해자들은 60대(남성), 40대(여성) 선주민 부부이다. 피해자들은 2013년 프라삭(현 KB프라삭은행)에서 3,000 달러를 대출 받을 당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은행은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2년 같은 은행(KB프라삭은행)에서 두 번째 대출(8,000 달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나이가 들어 농사일이 어려워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들 모두 대출담당직원의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생활수준도 낮아져 식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7]

피해자들은 40대 선주민 부부로,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22년 KB프라삭은행에서 1,800만 리엘을 대출 받아 상환중이며, 원금 및 이자로 매달 800,000리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농업 및 주택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기후 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출담당직원은 사채를 받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으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대출담당직원의 반복적 압박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토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8]

피해자들은 30대(남성), 20대(여성) 선주민 부부로, 두 딸을 두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21년경부터 KB프라삭은행에서 세 차례(1,200만 리엘, 2,400만 리엘, 2,000만 리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와 갑작스러운 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출담당직원은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집과 땅을 팔라고 하고, 마을이나 지방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17,500달러 상당의 토지를 10,000달러에 매각해야 했다(사례 8).

[사례 9]

피해자는 60대 여성 선주민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세 자녀와 살고 있다. 피해자는 2011년경 캄보디아 비전펀드(현 캄보디아우리은행)에서 8,000달러를, 2020년 캄보디아우리은행에서 10,000달러를 대출 받았다. 2019년 중국 광산회사가 피해자가 소유한 12헥타르의 농지를 보상금 없이 강제수용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끊겼고,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남은 농지에서의 농사도 어려워졌다. 대출담당직원은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하였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월 10% 이자의 사채를 사용하였고, 사채 상환을 위해 다시 은행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골다공증과 고혈압 악화로 일하기도 어려워져,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16세 딸은 과도한 노동으로 입원하고, 아들은 건설현장 임금을 받지 못하고, 농기계, 가구 등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

[사례 10]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농사 및 고무농장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2022년 KB프라삭은행에서 35,000달러를 대출 받았으나 기후 변화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출담당원들은 집 앞에서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독촉하기도 하고, 2-3명이 함께 집에 방문하여 2-3시간 동안 머무르며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은행은 피해자를 면 경찰서에도 신고하여, 면 경찰서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최근 피해자는 예전과 달리 이웃들이 자신을 비웃고 경멸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잦아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두 자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있으며, 둘째 딸(16세)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례 11]

피해자는 35세 여성으로, 65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는 집을 수리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7년 프라삭에서 12,000달러를, 2020년 KB프라삭은행에서 21,000 달러를 대출 받았다. 피해자는 2022년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수입이 끊기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피해자는 현재 프놈펜에서 미용사 및 재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담당직원은 그녀의 가게까지 찾아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토지를 팔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하겠다.”라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토지를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다.

[사례 12]

피해자들은 40대 부부로, 6명의 자녀를 둔 농부이다. 피해자들은 캄보디아우리은행에서 2020년 5,000달러를, 2021년 10,000달러를 대출 받아 농업, 주택 건축 및 생활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했으나 높은 이자율로 부담이 더 커졌다. 자녀들도 굴삭기, 트럭운전 등을 하여 가게를 돕고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여 역부족이다.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 매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사례 13]

피해자들은 50대 부부로, 4명의 자녀를 둔 농부이다. 피해자들은 2023년 2월 KB프라삭은행에서 주거지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8,000달러를 대출 받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출담당직원은 부부에게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였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과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가 학업을 그만두고 온라인 도박장 및 옥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은 대출 상환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자는 입장이지만, 아내는 가족이 살아갈 집과 농지를 잃을까 걱정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다.

[사례 14]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남편과는 사별하였으며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20년 KB프라삭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000달러, 7,000달러를 대출 받아 주택 건축에 사용하였다. 첫 대출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의 사망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출담당직원들은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하여 압박을 가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며, 사망 증명서를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침에 길거리에서 돼지고기와 밥을 팔고, 이웃의 빨래를 세탁 해주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문헌

단행본(국내)

- Lamia Karim (박소현 번역), 가난을 팝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하는 착한 자본주의의 맨얼굴, 오월의봄 (2015)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Women in Debt in Banglades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연구논문 및 보고서(국내)

- 관계부처 합동, “캄보디아 국가 협력 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2020. 1.), https://www.koica.go.kr/sites/khm_kr/file_download/CPS_Cambodia.pdf (2025. 4. 14. 확인).
- 김대인, “개발과 인권의 조화 관점에서 본 토지법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2010).
- 김종현, “신랄한 신자유주의 비판, 아쉬운 설명과 대안”, 마르크스21 제15호 (2016).
- 신윤진,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관할’의 의미와 초국경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인권연구 제4권 제1호 (2021).
- 이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제60권 제5호 (2011. 1.).

언론기사(국내)

- 심진용, “빈곤을 착취하는, 그라민은행의 또 다른 ‘민낯’”,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511271958165> (2015. 11. 27.).
- 오은선, “[혁신없는 은행] 美은행, 수익성 국내은행 2배 비결은... “자산관리 수수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2/18/Y4UTQNST7FDQHB7QJSNDOXTSGM/> (2024. 12. 18.).
- 조선경, “무하마드 유누스 “바로 앞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세요””, 동아비즈니스리뷰 (2012. 7. 26.),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5108/ac/magazine (2025. 4. 20. 확인).

웹페이지(국내)

- 세계법제정보센터, “캄보디아: 토지법(Land Law)”,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35963&AST_SEQ=165& (2022. 2. 18.).
- 외교부, “국가/지역 검색: 캄보디아 왕국”,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9 (2025. 3. 20. 확인).
- 외교부, “국제인권규범”, https://www.mofa.go.kr/www/wpge/m_3996/contents.do/ (2025. 3. 20. 확인).
- 우리금융그룹, “국내 네트워크 (2024. 8. 1. 기준)”, <https://www.woorifg.com/kor/company/introduce/summary/contentsid/32/index.do> (2025. 3. 20. 확인).
-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인권원칙”,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PCT0056> (2025. 3. 20. 확인).
- 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권경영 방침”,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BPBK10037> (2025. 3. 20. 확인).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경제 동향 (2024.2.10-16)”, https://overseas.mofa.go.kr/kh-ko/brd/m_3104/view.do?seq=1346097 (2025. 4. 20. 확인).
- 지표누리 e-나라지표, 은행 총자산이익율(ROA),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3 (2025. 3. 20. 확인).
- 한국은행, “이용호 본부장, `약탈적 대출'(기호일보 기고)” (2011. 6. 22.),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95/view.do?nttId=170949&menuNo=200559&searchBbsSeCd=z19&pageIndex=65> (2025. 4. 20. 확인).
- KB국민은행, “윤리강령”,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17601> (2025. 3. 20. 확인).
- KB금융그룹, “그룹사 현황 (기준일자 2024. 12. 31.)”, <https://www.kbfg.com/kor/about/network/domestic.htm> (2025. 4. 20. 확인).
- KOTRA, “캄보디아 정부 고리대금과의 전쟁, 소액대출기업에 불똥”,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sNo=218772&mid=a10400000000> (2017. 6. 15.).
- UNDP 서울정책센터,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25. 3. 20. 확인).

연구논문 및 보고서(국외)

- Baird, Ian G., "Indigenous communal land titling, the microfinance industry, and agrarian change in Ratanakiri Province, Northeastern Cambodia", 51(2)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2023).
- Bliss, Frank, ""Micro" Finance in Cambodia: Development,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Peace (2022. 8. 3.).
- Chaing Sinath & Neuv Socheata, "Cambodia" (Magnus Andersson et al. 편집), The Routledge Companion to International Housing Markets, London: Routledge (2022), 35-36.
- Chheang Lapy, "Microfinance in Cambod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 17.).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IFAD) and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Country Technical Note on Indigenous Peoples' Issues: Kingdom of Cambodia" (2023), 6-7.
-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The Indigenous World 2024" (2024. 4.), 176.
- LICADHO, "Debt Threats: A Quantitative Study of Microloan Borrowers in Cambodia's Kampong Speu Province", (2023. 8.), 8.
- Saunders, John and Trevor Smith, "Malnutrition: causes and consequences", Clin Med (Lond), 10(6), (2010. 12.).

언론기사(국외)

- Amarthalingam, Sangeetha, "Raising the alarm on rising private debt", The Phnom Penh Post, <https://www.phnompenhpost.com/special-reports/raising-alarm-rising-private-debt> (2020. 12. 31.).
- Biswas, Soutik, "India's micro-finance suicide epidemic", BBC, <https://www.bbc.com/news/world-south-asia-11997571> (2010. 12. 16).
- Brook, Jack, "Cambodia's Indigenous communities renounce communal land titles for microloans", Mongabay <https://news.mongabay.com/2024/01/cambodias-indigenous-communities-renounce-communal-land-titles-for-microloans/> (2024. 1. 31.).
- Brook, Jack, "Cambodia's microfinance sector hit by predatory lending claims",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Finance/Cambodia-s-microfinance-sector-hit-by-predatory-lending-claims> (2023. 11. 11.).
- Brook, Jack, "'I am afraid I will kill myself, like my husband': spotlight on loan firms in Cambodia after

Indigenous suicide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oct/23/cambodia-microfinance-loan-firms-indigenous-people> (2023. 10. 23.)

- Finch, Gavin and David Kocieniewski, "Big Money Backs Tiny Loans That Lead to Debt, Despair and Even Suicide",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2-microfinance-banks-profit-off-developing-world/> (2022. 5. 3.)
- Hang Sokunthea, Cambodia's Largest MFIs Eye Future as Commercial Banks, The Cambodian Daily, <https://english.cambodiadaily.com/news/cambodias-largest-mfis-eye-future-as-commercial-banks-126859/> (2017. 3. 22.).
- Heng, Dyna, Impacts of Interest Rate Cap on Financial Inclusion in Cambodia, IMF Working Paper,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1/04/29/Impacts-of-Interest-Rate-Cap-on-Financial-Inclusion-in-Cambodia-50349> (2021. 4. 29.).
- Ou Sokmean and Meng Seavmey, "Rising Cambodian Cashew Sector Hindered by Climate Change and Low Processing Capacities", Cambodianess, <https://cambodianess.com/article/rising-cambodian-cashew-sector-hinders-by-climate-change-and-low-processing-capacities> (2024. 11. 5. 확인).
- Titthara, May and Aisha Down, "A Prayer from Rattanakiri", Khmer Times, <https://www.khmertimeskh.com/34022/a-prayer-from-rattanakiri/> (2015. 12. 28.).
- Turton, Shaun and Bopha Phorn, Cambodia's "reckless" microfinance industry puts economy at risk,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Business-trends/Cambodia-s-reckless-microfinance-industry-puts-economy-at-risk> (2019. 8. 6.).

웹페이지(국외)

- Asia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Database,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tlas Method, https://kidb.adb.org/explore?filter%5Bindicator_id%5D=2200006&filter%5Beconomy_code%5D=CAM&filter%5Byear%5D=2023&grouping=indicators&showRegions=false (2025. 3. 20. 확인).
- Cerise+SPTF, Annex: Client Protection Standards, <https://cerise-sptf.org/about-client-protection/#downloadmanual> (2022. 2.), 2.
- Cerise+SPTF, Universal Standards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Management, <https://cerise-sptf.org/download-the-manual/> (2022. 2.).
- Equator Principles, "About the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about-the-equator-principles/>

principles/ (2025. 3. 20. 확인).

- European Un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Directive (EU) 2024/1760,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2025. 3. 20. 확인).
- KB Financial Group, “KB Financial Group Human Rights Policy”, <https://www.kbfg.com/eng/esg/strategy/policy/environment/list.jsp> (2025. 3. 20. 확인).
- KB Financial Group,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2023 Self-Assessment Report”, https://www.kbfg.com/common/jsp/fileDownUtil.jsp?filepath=/data/esg/initiative/KBFG_PRB.pdf (2023. 8.), 20.
- KB PRASAC Bank, “ESG Management”, <https://www.kbprasacbank.com.kh/en/esg-management/> (2025. 4. 20. 확인).
- KB PRASAC Bank, “Funding Partner & Member”, <https://www.kbprasacbank.com.kh/en/bank-overview/funding-partner-member/> (2024. 12. 31. 확인).
- Klapper, Leora,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S&P Global Finlit Survey, https://gflec.org/wp-content/uploads/2015/11/Finlit_paper_16_F2_singles.pdf (2015).
- Koem Chhuonvuoch, Indigenous Communal Land Titling in Cambodia, Heinrich Böll Stiftung Cambodia <https://kh.boell.org/en/2022/08/10/indigenous-communal-land-titling-still-hundred-years-go> (2022. 8. 10.).
-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Cambodia - IWGIA -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https://www.iwgia.org/en/cambodia.html> (2025. 1. 13. 확인).
- IPS Cambodia, “The Basics of Soft Title and Hard Title in Cambodia”, <https://ips-cambodia.com/soft-title-and-hard-title-in-cambodia/> (2023. 3. 8.).
- Office of the Compliance Advisor/Ombudsman(CAO), Cambodia: Financial Intermediaries-04, <https://www.cao-ombudsman.org/cases/cambodia-financial-intermediaries-04> (2025. 3. 20. 확인).
- Pact, “In Cambodia, a mining company & an indigenous village are working together for better development”, <https://www.pactworld.org/features/cambodia-mining-company-indigenous-village-are-working-together-better-development> (2016. 11. 18.).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ambodia”,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4/index/khm> (2025. 4. 20. 확인).
- UN Development Programme, Curbing Private Tutoring and Informal Fees in Cambodia's Basic

Education, <https://www.undp.org/cambodia/publications/curbing-private-tutoring-and-informal-fees-cambodias-basic-education> (2015. 6. 12.).

- U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3-24> (2024. 3. 13.).
-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About the Principles”, <https://www.unepfi.org/banking/more-about-the-principles/> (2025. 3. 20. 확인).
-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Shaping the future of banking”, <https://www.unepfi.org/banking/bankingprinciples/> (2025. 3. 20. 확인).
-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UNEP FI), “Signatories”, <https://www.unepfi.org/banking/prbsignatories/> (2025. 3. 20. 확인).
- UNICEF, World Food Programme, and Asian Development Bank, “COVID-19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Phase II Report”, <https://www.wfp.org/publications/cambodia-covid-19-socio-economic-impact-assessment-phase-2-report> (2022. 12. 14.).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BHR Treaty Process,” <https://www.ohchr.org/en/business-and-human-rights/bhr-treaty-process> (2025. 3. 20. 확인).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 Interpretive Guide”, <https://www.ohchr.org/en/publications/special-issue-publications/corporate-responsibility-respect-human-rights-interpretive> (2012. 6. 1.).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R),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2025. 4. 3. 확인).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in Cambodia, “Collective land titling in Cambodia - a case for reform?”, https://cambodia.ohchr.org/iplands/wp-content/uploads/2021/05/CLT-RECOMMENDATION_ENG.pdf (2020. 8.).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in Cambodia, “Economic and other land concessions”, <https://cambodia.ohchr.org/en/economic-social-rights/economic-and-other-land-concessions> (2015. 1. 26.).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in Cambodia,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s://cambodia.ohchr.org/en/economic-social-rights/rights-indigenous-peoples> (2015. 1. 26.).

- Woori Financial Group, "Reporting and Self-Assessment Template", <https://www.woorifg.com/common/file/2023%20PRB%20Reporting%20and%20Self%20Assessment%20WFG.pdf> (2023. 8.).
- World Bank Group, "Cambodia Economic Update: Cambodia in the time of Covid-19", <https://documents.worldbank.org/pt/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165091590723843418/cambodia-economic-update-cambodia-in-the-time-of-covid-19-special-focus-teacher-accountability-and-student-learning-outcomes> (2020. 5. 29.).
- World Bank Group, "Cambodia Poverty Assessment: Toward a More Inclusive and Resilient Cambodia", <https://hdl.handle.net/10986/38344> (2022. 11.).
- World Bank Group,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5. 3. 20. 확인).
- World Bank Group, "Indigenous Peoples", <https://www.worldbank.org/en/topic/indigenouspeoples> (2025. 3. 20. 확인).
- World Bank Group, "Pandemic Checks Cambodia's Progress on Poverty",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1/28/pandemic-checks-cambodia-s-progress-on-poverty> (2022. 11. 28.).
- World Health Organization, "Cambodia: Health data overview for the Kingdom of Cambodia", World Health Organization Data, <https://data.who.int/countries/116> (2025. 3. 13. 확인).

캄보디아 정부 문서

-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Employment and Labor, <https://cdc.gov.kh/laws-and-regulations/employment-and-labor/> (2025. 3. 20. 확인).
- Department of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Cambodia), "About the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Programme in Cambodia _ IDPoor",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Programme in Cambodia _ IDPoor, <https://idpoor.gov.kh/en/about/> (2025. 3. 18. 확인).
-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23", https://www.nbc.gov.kh/english/publications/annual_reports.php (2025. 4. 3. 확인).
- National Bank of Cambodia, Data on MFI Sector, Report of Loan and Non-performing Loan, , https://www.nbc.gov.kh/english/economic_research/mfis_reports.php (2023. 12. 31.).

유엔 문서

-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1/295 (2007. 9. 13.).
-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1/128 (1986. 12. 4.).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A/RES/60/14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05. 12. 16.).
- UN Human Rights Council, Private debt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effects of foreign debt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States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HRC/43/45 (2020. 1. 3.).
-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 Vitit Muntarbhorn, A/HRC/54/75 (2023. 7. 20.).
- UN Human Rights Council, Visit to Sri Lanka: 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ffects of foreign debt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States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HRC/40/57 (2019. 1. 17.).

조약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문서

- 국제노동기구(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ILO 협약 제182호), 제3조(1999. 6. 17. 채택, 2000. 11. 19. 발효).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1999):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1999):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00):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12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2017):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국가의무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E/C.12/KOR/CO/4(2017. 10. 19).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Cambodia, E/C.12/KHM/CO/2(2023. 3. 27).

기타 문헌 자료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KB프라삭 관련 질의(7.30)에 대한 답변서”, 김남근 의원실 제출 자료 (2024. 8. 2.).
- KB PRASAC Bank, “Annual Report 2023”, KB PRASAC Bank (2024).
- KB PRASAC Bank, “Credit Policy”, KB PRASAC Bank (2024. 1.).
- KB PRASAC Bank, “Procedure on Loan Recovery”, KB PRASAC BANK (2023. 1.).
- WOORI BANK (CAMBODIA) PLC., “Annual Report 2023” (2024).
- WOORI BANK (CAMBODIA) PLC, “Loan Application and Assessment Process Guideline” (2023. 12. 20.).
- WOORI BANK (CAMBODIA) PLC., “Manual of Credit Operations” (2024. 7. 1.),

발행 정보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저자:	강미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지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양현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도움 주신 분:	김산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나현필(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손고운(한겨레21) 양민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원활동가)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Cerise+SPTF Equitable Cambodia



KTNC Watch